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937호 2025년 6월 2일(월)

경 상 북 도

■ 고 시

-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198호) 5

회 람									
--------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영주시 택시 자율감차계획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00호) 65
- 어미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01호) 67
-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문
(경상북도 고시 제2025-202호) 72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안)
(경상북도 고시 제2025-203호) 73

■ 공 고

- 2025년 경상북도 민원만족도 조사(상반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216호) 75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226호) 77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227호) 78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228호) 79
- 경상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230호) 80
- 경상북도 문화유산 지정 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233호) 186

시 군

■ 고 시

- 경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5-116호) 190
- 구미 도시관리계획(옥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5-153호) 199
- 문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5-94호) 230

■ 공 고

- 안동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5-1277호) 242
-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5-1683호) 247
-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와1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정정)
(경산시 고시 제2025-1030호) 249
- 의성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열람공고
(의성군 공고 제2025-878호) 258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374호) 262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198호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958번지 일원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6. 2.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 명칭

-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위치한 경북도청신도시 시행지역으로서 기존 산업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하여 인구유입 및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하고 양질의 도시인프라 구축 및 선도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 확보와 안동, 예천의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958번지 일원

나. 면 적 : 146,12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2024. ~ 2026. 6. 30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비고
C 제조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H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 정보 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계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도로	기타
면 적(㎡)	146,129.0	8,309.0	92,302.3	2,516.0	6,055.5	8,499.0	11,669.3	16,777.9
필지수 (개소)	165	13	51	1	9	21	39	31
구성비(%)	100.0	5.7	63.2	1.7	4.1	5.8	8.0	11.5

나. 소유별 현황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예천군	경상북도 개발공사	한국 농어촌공사
면 적(㎡)	146,129.0	335.0	220.0	1,984.0	128,510.2	15,079.8
필지수 (개소)	165	2	1	20	120	22
구성비(%)	100.0	0.2	0.2	1.4	87.9	10.3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146,129	100.0	
산업시설용지	117,106	80.1	
공공시설용지	29,023	19.9	
도 로	16,989	11.6	
주 차 장	2,018	1.4	
공 원	8,008	5.5	
녹 지	2,008	1.4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 총괄표

(단위 : 개, m, ㎡)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4	948	16,989	1	232	4,988	3	716	12,001	-	-	-	
중로	4	948	16,989	1	232	4,988	3	716	12,001	-	-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4개노선					948	-	-	-	-	-	
기정	중로	1	15	21	집산 도로	232	대로2-3	중로1-13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18-72호 (2018.3.8.)	
기정	중로	2	21	16.5	국지 도로	171	중로1-15	중로2-20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기정	중로	2	25	16.5	국지 도로	390	중로1-15	중로1-14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기정	중로	2	26	16.5	국지 도로	155	중로2-25	중로1-13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2) 주차장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18	-	2,018	-	
기정	23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838-1번지 일원	2,018	-	2,018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3) 공원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008	-	8,008	-	
기정	12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02-1번지 일원	8,008	-	8,008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4) 녹지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08	-	2,008	-	
기정	29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957-5번지 일원	1,478	-	1,478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기정	30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839-6번지 일원	530	-	530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5) 용수공급계획

① 생활용수량

○ 안동시 지방상수도(용상1·2정수장)로부터 용수공급

업 종	부지면적 (㎡)	종사자		생활용수		비고
		평균원단위 (인/천㎡)	종업원수 (인)	원단위 (L/인·일)	용수량 (㎡/일)	
계	117,106		1,552		155.2	
지식문화 첨단산업(A)	75,837	12.5	948	100	94.8	
지식문화 첨단산업(B)	21,616	12.8	277	100	27.7	
지식문화 산업(C)	19,653	16.6	327	100	32.7	

자료 : 1. 생활용수 원단위는 상수도시설기준(2010. 한국상하수도협회)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방안연구」, 2016, 국토교통부
부지면적 1,000㎡ 당 종사자 평균 원단위 적용

② 공업용수량

업 종	부지면적 (㎡)	용수 평균원단위 (인/천㎡·일)	공업용수량 (㎡/일)	비고
계	117,106		486.0	
지식문화첨단산업(A)	75,837	4.1	310.9	
지식문화첨단산업(B)	21,616	8.1	175.1	
지식문화산업(C)	19,653	-	-	

자료 :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2022.01. 환경부)

※ 공업용수산정 시 비제조업 제외

③ 총 용수량

구 분		용수량(㎡/일)	비고
계		641.2	
산업시설	생 활 용 수	155.2	
	공 업 용 수	486.0	

6) 오·폐수처리계획

① 오수량

○ 사업지구는 자연유하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방류

구 분	생활용수량 (㎡/인/일)	분뇨 발생유량비	분뇨 발생유량 (㎡/일)	잡배수 오수전환율	잡배수 발생량 (㎡/일)	오수 발생량 (㎡/일)	비고
계	155.2		0.93		135.76	136.69	
산업시설	155.2	0.006	0.93	0.88	135.76	136.69	

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 5., 국립환경과학원)

② 폐수량

- 산업폐수 발생 시 개별 사업체에서 신도시 내 하수처리장의 처리가능한 수질로 전처리 후 오수관로에 배출하여 최종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거나 전량 위탁처리 계획

업 종	공업 용수량 (m ³ /일)	폐수화율 (%)	폐수량 (m ³ /일)	지하수량 (m ³ /일)	일최대 폐수발생량 (m ³ /일)	비고
계	486.0		195.1	9.8	204.9	
지식문화첨단산업(A)	310.9	32.1	99.8	5.0	104.8	
지식문화첨단산업(B)	175.1	54.4	95.3	4.8	100.1	
지식문화산업(C)	-	-	-	-	-	

※ 폐수 산정 시 비제조업 제외

③ 오·폐수량

구 분		오·폐수량(m ³ /일)	비 고
계		341.59	
산업시설	오 수	136.69	
	폐 수	204.90	

7) 폐기물처리계획

-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도청신도시 내 신설되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서 처리가능한 소각대상, 유기성폐기물은 처리하고 기타 생활폐기물은 안동시 및 예천군의 폐기물처리계획에 준하여 처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입주업체별 적정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여 별도 위탁처리토록 할 계획임

① 산업폐기물 발생량

구 분	면적(m ²)	가연성(kg/일)		불연성(kg/일)		총 발생량(kg/일)
		평균원단위(kg/m ² /일)	발생량	평균원단위(kg/m ² /일)	발생량	
산업시설	117,106	0.020	2,342.1	0.103	12,061.9	14,404.0

자료 :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 2023」의 업종별 배출시설계폐기물의 업종 평균원단위 적용

② 생활폐기물 발생량

구 분	종사자수(인)	가연성(kg/일)		불연성(kg/일)		총 발생량(kg/일)
		원단위(kg/m ² /일)	발생량	원단위(kg/m ² /일)	발생량	
계	1,552		679.8		91.6	771.4
비가정 부문	종량제	0.185	287.1	0.019	29.5	316.6
	음식물	0.146	226.6	-	-	226.6
	재활용	0.107	166.1	0.040	62.1	228.2

자료 :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 2023」의 생활폐기물 세부발생원별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원단위 적용

③ 총 폐기물 발생량

(단위 : kg/일)

구 분	가연성	불연성	합계
총 계	15,175.4(≒16톤/일), 연간 약 5,840톤 산정		
소 계	3,021.9	12,153.5	15,175.4
사업장 폐기물	2,342.1	12,061.9	14,404.0
생활폐기물	679.8	91.6	771.4

8) 전력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풍산변전소에서 전력 공급 예정

구 분	부지면적 (㎡)	평균 원단위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평균 가동율 (%)	평균 부하 (kW)	부하율 (%)	최대 부하 (kW)	비고
소 계	117,106	-	27,735	-	-	-	8,565	
산업시설용지	지식문화첨단 산업(A)	75,837	249.1	18,891	79.6	2,708	46.9	5,774
	지식문화첨단 산업(B)	21,616	279.2	6,034	78.8	875	46.8	1,870
	지식문화산업 (C)	19,653	143.0	2,810	76.8	418	45.4	921
최대부하(kW)	부등율 1.35 적용						6,344	
변압기용량(kVA)	최대전력부하 / 0.9 × 1.1 × 1.1						8,529	

주 : 전력원단위, 부하율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평균 공장가동율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한국에너지공단)

비제조업은 제조업 단위부하 최저값 적용

평균부하 = 전력사용량 ÷ 8,760(24시간 × 365일) ÷ 평균 가동율 × 1,000

부등율은 「배전간선 설치공사 업무처리 절차서」(한국전력공사, 2015. 09.)

변압기용량 = 최대전력부하 / 역율 × 변압기 손실을 고려한 여유율 × 장래의 미확정 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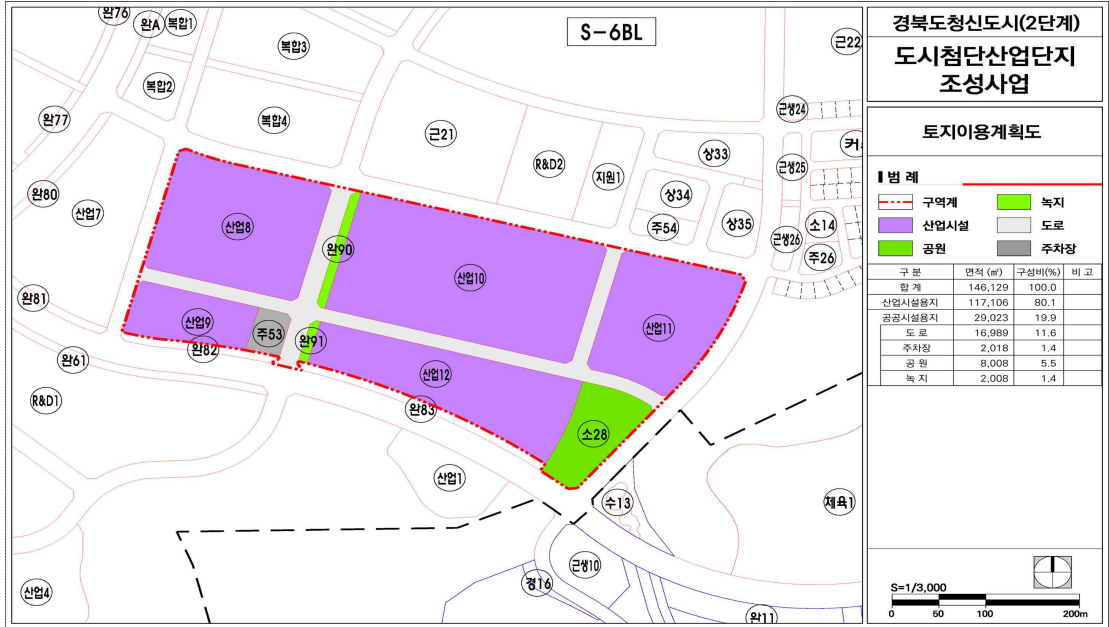
9) 통신계획

○ 단지내 통신시설은 KT와 협의하여 공급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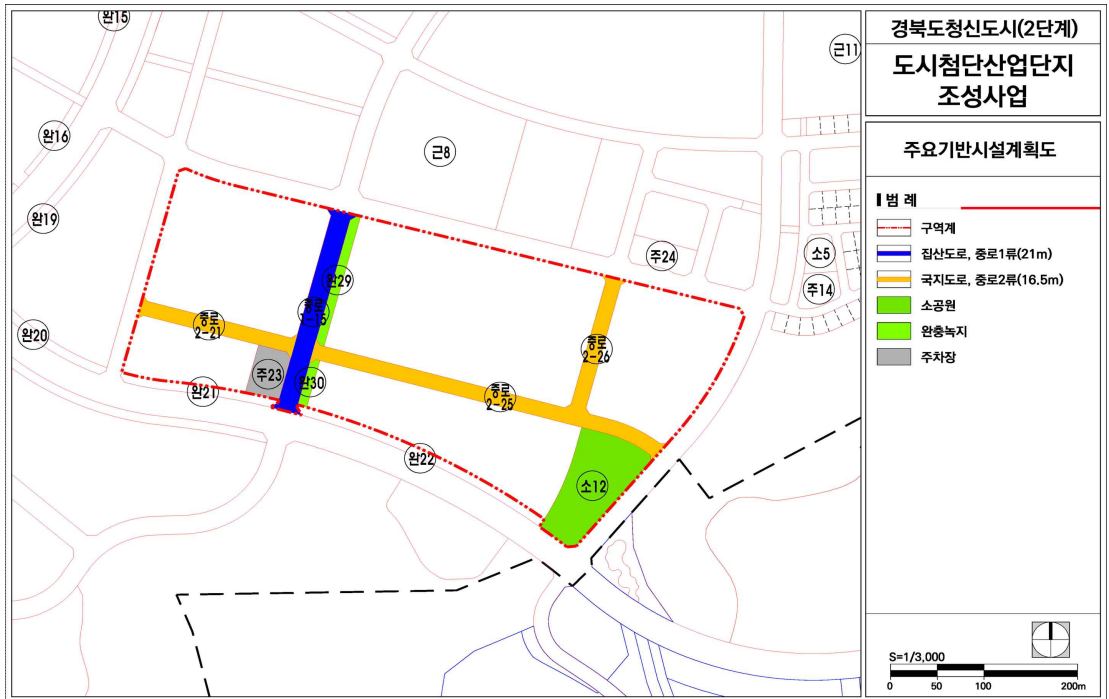
구 분	종사자수(인)	산정기준	소요대수	계획회선 (여유율 30%적용)
산업시설	1,552	1대/10인	156	203

다. 토지이용계획도, 기반시설계획도

1) 토지이용계획도



2) 기반시설계획도



9. 재원조달계획

가. 자금조달계획

-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 자체자금으로 시행
- 대상지는 경북도청신도시 내 일부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비 미발생

구분	계	용지비	조사설계비	공사비	기타비용
총 사업비 (억원)	240	45	55	120	20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총사업비	240	148	46	46	
용지비	45	45	-	-	농어촌공사 매입분
조사 설계비	55	33	11	11	
공사비	120	60	30	30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기타비용	20	10	5	5	제영향평가, 각종부담금 등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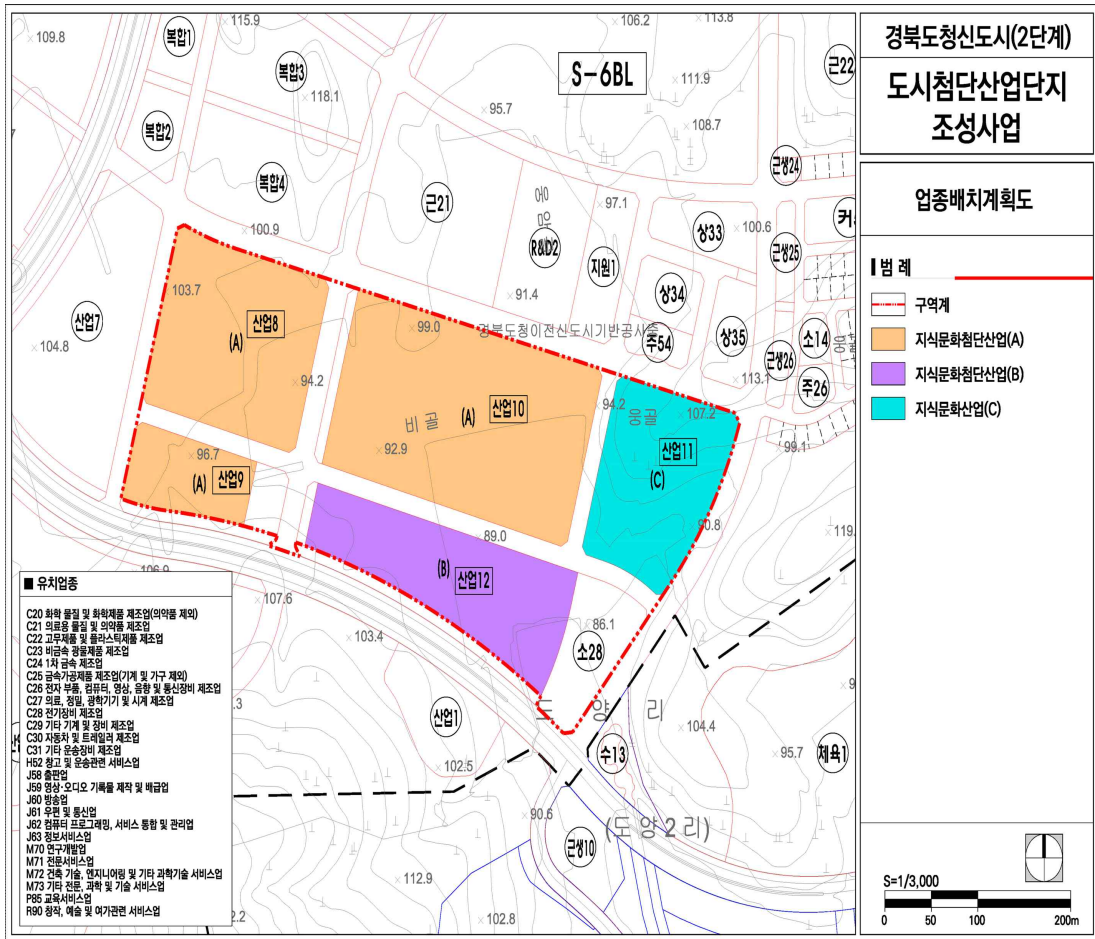
그 세목 : 붙임1

11. 에너지 사용계획 : 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계		117,106	100.0		
지식 문화 첨단 산업 (A)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75,837	64.8	산업8, 산업9, 산업10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0	방송업			
	J61	우편 및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지식 문화 첨단 산업 (B)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616	18.4	산업12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C24	1차 금속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0	방송업			
	J61	우편 및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지식 문화 산업 (C)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9,653	16.8	산업11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0	방송업			
	J61	우편 및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입주수요에 관한 계획

- 총 50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총 수요면적은 187,530㎡이며, 산업시설용지 계획면적 117,106㎡의 160.1%임

구 분		업체 수(개)	희망면적(m ²)	
입 주 회 망 업 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	9,900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	27,830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6	8,580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	127,905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9,900
	H5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1	1,650
	J58	출판업	2	105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	1,000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	330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	330
-	기타 업종	1	-	
소 계		50	187,530	

1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가. 개발되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비 고
합 계		146,129	100.0		
처분 대상 용지	소 계	119,124	81.5		
	산업시설용지	117,106	80.1	실수요 및 유상공급	
	주차장	2,018	1.4	유상공급	
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소 계	27,005	18.5		
	도로	16,989	11.6	관리청에 무상귀속협의	
	공원	8,008	5.5	관리청에 무상귀속협의	
	녹지	2,008	1.4	관리청에 무상귀속협의	

1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17.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가.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 사업대상지는 98.2%(143,590m², 142필지)가 사유지로 사유지 중 2024년 현재 까지 89.5%(128,510.2m²)의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10.5%(15,079.8m²)는 한국 농어촌공사 토지로 지속적으로 토지의 사용권리 등을 확보토록 할 예정임
- 산업단지 내 포함되는 국·공유지는 전체토지의 1.8%인 2,539m²(23필지)로 관련법규에 의거 무상귀속 또는 유상매입토록 하겠음

나. 주민이주대책 : 해당없음

1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 분	필지수(개)	면적(㎡)	비고
합 계	23	2,539	
도 로	23	2,539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구 분	등급	류별	폭원 (m)	노선(시설)수 (개소)	연장 (m)	면적 (㎡)	비 고
도 로	소계			4	848	16,989	
	중로	1	21	1	232	4,872	
	중로	2	16.5	3	616	10,164	
소 공 원				1	-	8,008	
완 충 녹 지				2	-	2,008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 자 : 경상북도개발공사장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의한 첨단산업 단지조성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지방자치단체(예천군수)

19.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I.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129.0	-	146,129.0	100.0	
공업지역	146,129.0	-	146,129.0	100.0	
준공업지역	146,129.0	-	146,129.0	100.0	

※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기결정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958번지 일원	-	증) 146,129.0	146,129.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A=146,129.0㎡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내 산업시설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하여 인구유입 및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토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129.0	-	146,129.0	100.0	
공업지역	146,129.0	-	146,129.0	100.0	
준공업지역	146,129.0	-	146,129.0	100.0	

※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기결정 사항임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146,129	100.0	
산업시설용지	117,106	80.1	
공공시설용지	29,023	19.9	
도 로	16,989	11.6	
주 차 장	2,018	1.4	
공 원	8,008	5.5	
녹 지	2,008	1.4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 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948	16,989	1	232	4,988	3	716	12,001	-	-	-	
중로	4	948	16,989	1	232	4,988	3	716	12,001	-	-	-	

■ 도로 결정조서 총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3	21		232						
	중로	1	15	21	집산 도로	232	대로2-3	중로1-13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예천)
기정	중로	2	46	16.5		171						
	중로	2	21	16.5	국지 도로	171	중로1-15	중로2-20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예천)
기정	중로	2	50	16.5		390						
	중로	2	25	16.5	국지 도로	390	중로1-15	중로1-14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예천)
기정	중로	2	54	16.5		155						
	중로	2	26	16.5	국지 도로	155	중로2-25	중로1-13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예천)

■ 예천군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5	21	집산 도로	232	대로2-3	중로1-13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제2018-72호 (2018.3.8.)	
기정	중로	2	21	16.5	국지 도로	171	중로1-15	중로2-20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기정	중로	2	25	16.5	국지 도로	390	중로1-15	중로1-14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기정	중로	2	26	16.5	국지 도로	155	중로2-25	중로1-13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기결정 사항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총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3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838-1번지 일원	2,018	-	2,018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예천23) (2023.5.25.)	

■ 예천군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3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838-1번지 일원	2,018	-	2,018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기결정 사항임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총괄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8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02-1번지 일원	8,008	-	8,008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예천12)

■ 예천군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 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02-1번지 일원	8,008	-	8,008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기결정 사항임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 총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0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957-5번지 일원	1,478	-	1,478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예천29)
기정	91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839-6번지 일원	530	-	530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예천30)

■ 예천군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9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957-5번지 일원	1,478	-	1,478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기정	30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839-6번지 일원	530	-	530	경상북도고시 제2023-153호 (2023.5.25.)	

※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기결정 사항임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기결정 사항)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산업8	-	25,758.0	1	4,222.0	· 획지 분할 불허
			2	4,187.0	
			3	4,225.0	
			4	4,407.0	
			5	4,395.0	
			6	4,322.0	
산업9	-	8,323.0	1	8,323.0	
산업10	-	41,756.0	1	5,149.0	
			2	5,164.0	
			3	5,217.0	
			4	5,241.0	
			5	5,215.0	
			6	5,244.0	
			7	5,244.0	
			8	5,282.0	
산업11	-	19,653.0	1	3,460.0	
			2	3,183.0	
			3	2,868.0	
			4	2,775.0	
			5	3,615.0	
			6	3,752.0	
산업12	-	21,616.0	1	8,209.0	
			2	13,407.0	

■ 변경 (금회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산업8	-	25,758.0	1	4,222.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2	4,187.0	
			3	4,225.0	
			4	4,407.0	
			5	4,395.0	
			6	4,322.0	
산업9	-	8,323.0	1	8,323.0	
산업10	-	41,756.0	1	5,149.0	
			2	5,164.0	
			3	5,217.0	
			4	5,241.0	
			5	5,215.0	
			6	5,244.0	
			7	5,244.0	
			8	5,282.0	
산업11	-	19,653.0	1	3,460.0	
			2	3,183.0	
			3	2,868.0	
			4	2,775.0	
			5	3,615.0	
			6	3,752.0	
산업12	-	21,616.0	1	8,209.0	
			2	13,407.0	

나)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합 계		2,018.0		2,018.0	
53	-	2,018.0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838-1번지 일원	2,018.0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기결정 사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준공업 지역)	산업8 ~산업12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및 파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부속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함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주 제한 : 산업11(4,5,6)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 입주 제한 : 산업8~12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7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주요 간선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10cm 이하로 하되 대지가 도로에 접한 경우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1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며,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구역)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구역)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Ⅳ편 제6장’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준공업 지역)	산업8 ~산업12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2단계구역)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대지 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교통영향평가’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주차장 설치시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주차장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p> <p>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p> <p>-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p> <p>• 대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p> <p>-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p>
		기타	<p>•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 산업시설 : 20% 이상</p> <p>-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p> <p>•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1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Smart-City 에 관한 사항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구역)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p>

■ 변경 (금회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준공업 지역)	산업8 ~산업12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및 파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p>※ 부속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함</p>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주 제한 : 산업11(4,5,6)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 입주 제한 : 산업 8~12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5층이하 (산업8, 9, 10, 12) • 최고층수 : 7층이하 (산업11)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주요 간선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10cm 이하로 하되 대지가 도로에 접한 경우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1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며,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구역)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구역)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Ⅳ편 제6장’의 지침을 따른다.
		산업 시설 (준공업 지역)	산업8 ~산업12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 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교통영향평가'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주차장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 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 면적에 대하여 m^2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p>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m² 당 0.1분을 식재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 : 20% 이상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1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Smart-City 에 관한 사항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구역)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나) 주차장용지(변경)

■ 기정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기결정 사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준공업 지역)	주53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의 20%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계획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7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 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이용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부속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속시설의 배치는 위계가 낮은 도로변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대지의 각각부에 위치하지 못한다. 단, 전면도로가 1개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건축선(건축한계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준공업 지역)	주53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 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 변경 (금회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준공업 지역)	주53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의 20%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계획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층수 : 5층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건축선(건축한계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 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 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기결정 사항임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 단지내 보행출입구 관한 계획

도면번호	조 성 기 준
공공 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는 결정도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연결성, 건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 및 내부 선형 변경이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6m 이상으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벤치 등 보행자를 위한 휴게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는 상부가 오픈되는 형태를 권장한다. 다만, 용적률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향상 등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필로티형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필로티형으로 조성시 지상부 보행자를 위한 유효높이는 최소 3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단지내 보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는 결정도상 표시된 위치를 준수토록 한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조 성 기 준
보행자 우선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기결정 사항임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조 성 기 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결정도에 별도 도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와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조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도면번호	조성 기준
	<p>(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m이상의 전면공지 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3m 이상은 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 환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전면공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 및 녹지와 연결하였을 경우 연결한 공원과 유사하게 조경처리를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제43조,‘동법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각각부 및 주요 보행 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도면번호	조성 기준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공개공지에 페이빙이나 도입하고자하는 공간의 연출방법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 1장 제15조”의 ‘한국적 전통디자인’을 적용하고, 소규모 커뮤니티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배치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아래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IV.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기결정 사항임

1.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총괄

1) 소공원

가) 28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8,008.0	0.0					
녹 지	8,008.0	-					
공원시설율 (법정20%이하)	0.0 / 8,008.00 x 100 = 0.00%						
공원건폐율 (법정5%이하)	0.0 / 8,008.00 x 100 = 0.00%						

■ 시설조서

구분	시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				8,008.0	0.0						
녹지	녹지		전지역	8,008.0	-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0.0	0.0				

나. 예천군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소공원

가) 12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8,008.0	0.0					
녹 지	8,008.0	-					
공원시설율 (법정20%이하)	$0.0 / 8,008.00 \times 100 = 0.00\%$						
공원건폐율 (법정5%이하)	$0.0 / 8,008.00 \times 100 = 0.00\%$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합계				8,008.0	0.0						
녹지	녹지		전지역	8,008.0	-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0.0	0.0				

20.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예천군청 지역경제과(☎054-650-62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붙임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합계	165 필지		209,897.9	146,129							
1	호명읍 산합리	821 - 3	임야	302	100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2	호명읍 산합리	821 - 4	답	4,922	1,80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3	호명읍 산합리	821 - 6	답	8,525	7,214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4	호명읍 산합리	821 - 8	답	6,683	404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5	호명읍 산합리	821 - 17	답	10,404	1,384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6	호명읍 산합리	821	답	3,950	957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7	호명읍 산합리	822 - 1	답	4,955	3,847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8	호명읍 산합리	822 - 2	구거	863	86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9	호명읍 산합리	823 - 1	건	304	304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0	호명읍 산합리	824 - 1	답	417	417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1	호명읍 산합리	826 - 1	답	3,084	296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요 내용
12	호명읍 산합리	826 - 2	구거	836	603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복로35				
13	호명읍 산합리	830 - 1	구거	668	66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14	호명읍 산합리	831 - 1	답	1,306	1,306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5	호명읍 산합리	832 - 1	전	2,033	1,296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6	호명읍 산합리	833	전	3,038	1,055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17	호명읍 산합리	834	전	1,015	506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8	호명읍 산합리	835 - 3	묘지	414	166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9	호명읍 산합리	835 - 5	구거	12	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20	호명읍 산합리	836 - 1	전	318	218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21	호명읍 산합리	837 - 1	답	1,672	1,30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22	호명읍 산합리	838 - 1	전	1,935	1,416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23	호명읍 산합리	839 - 2	답	470	470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24	호명읍 산합리	839 - 6	전	2,741	2,40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5	호명읍 산합리	840 - 1	임야	879	700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26	호명읍 산합리	852 - 1	임야	380	250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27	호명읍 산합리	852 - 3	답	281	9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28	호명읍 산합리	861 - 2	대	240	240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29	호명읍 산합리	861 - 3	도로	103	103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30	호명읍 산합리	861 - 4	도로	109	109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31	호명읍 산합리	861 - 5	도로	196	183	예천군					
32	호명읍 산합리	861 - 6	도로	120	120	예천군					
33	호명읍 산합리	863 - 2	구거	2,261	459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 북로35					
34	호명읍 산합리	863 - 6	도로	16	16	예천군					
35	호명읍 산합리	864 - 3	답	1,188	248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36	호명읍 산합리	864 - 4	도로	162	83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37	호명읍 산합리	864 - 5	도로	174	109	예천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8	호명읍 산합리	869 - 3	전	52	52	경상북도개발공사 길7(옥산동)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39	호명읍 산합리	869 - 4	도로	17	17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40	호명읍 산합리	869 - 5	전	2,477	470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41	호명읍 산합리	869 - 7	도로	14	14	예천군					
42	호명읍 산합리	870	대	487	17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43	호명읍 산합리	880 - 1	대	1,213	441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44	호명읍 산합리	880	대	1,101	1,021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45	호명읍 산합리	881	대	588	4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46	호명읍 산합리	882	대	397	331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47	호명읍 산합리	883 - 1	대	261	261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48	호명읍 산합리	883 - 2	대	744	424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49	호명읍 산합리	883 - 3	대	49	49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50	호명읍 산합리	884 - 1	전	48	46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1	호명읍 산합리	884	전	121	11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52	호명읍 산합리	887 - 2	구거	489	28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 북로35					
53	호명읍 산합리	888 - 1	임야	709	200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54	호명읍 산합리	888 - 3	임야	803	306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55	호명읍 산합리	889	대	552	486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56	호명읍 산합리	890 - 1	대	1,041	1,041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57	호명읍 산합리	890 - 2	도로	83	83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58	호명읍 산합리	891 - 1	대	284	284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59	호명읍 산합리	891 - 2	구거	76	76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60	호명읍 산합리	891 - 3	대	195	195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61	호명읍 산합리	891 - 4	대	223	223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62	호명읍 산합리	892 - 1	대	471	471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63	호명읍 산합리	892 - 3	대	3	3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64	호명읍 산합리	893	대	942	942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65	호명읍 산합리	894	대	456	456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66	호명읍 산합리	895 - 1	과수원	2,516	2,516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67	호명읍 산합리	895 - 2	구거	958	958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68	호명읍 산합리	895 - 3	임야	1,077	1,077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69	호명읍 산합리	895 - 4	도로	46	46		예천군				
70	호명읍 산합리	895 - 5	도로	136	136		예천군				
71	호명읍 산합리	895 - 6	도로	7	7		예천군				
72	호명읍 산합리	895 - 7	도로	50	50		예천군				
73	호명읍 산합리	895 - 8	도로	292	292		예천군				
74	호명읍 산합리	895 - 9	임야	919	919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75	호명읍 산합리	896 - 1	대	806	806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76	호명읍 산합리	896 - 2	도로	60	60		예천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7	호명읍 산합리	896 - 3	도로	11	11	예천군				
78	호명읍 산합리	897 - 1	답	1,506	1,506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79	호명읍 산합리	897 - 2	도로	33	33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80	호명읍 산합리	897 - 3	도로	255	255	예천군				
81	호명읍 산합리	897 - 4	답	477	477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82	호명읍 산합리	898 - 2	도로	40	40	예천군				
83	호명읍 산합리	898 - 3	도로	279	279	예천군				
84	호명읍 산합리	899 - 2	도로	13	13	예천군				
85	호명읍 산합리	899 - 3	도로	24	24	예천군				
86	호명읍 산합리	902 - 4	도로	28	28	예천군				
87	호명읍 산합리	902 - 5	도로	158	158	예천군				
88	호명읍 산합리	902 - 6	도로	143	143	예천군				
89	호명읍 산합리	938	구거	535	200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 북로3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90	호명읍 산합리	943	도로	2,044	1,00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91	호명읍 산합리	946	구거	1,789	1,181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92	호명읍 산합리	949 - 1	도로	150	127	국(국토부)							
93	호명읍 산합리	955 - 6	구거	2,480.9	677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복로35						
94	호명읍 산합리	956 - 2	답	2,806.7	218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95	호명읍 산합리	956 - 3	답	4,276.5	2,801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96	호명읍 산합리	956 - 4	답	3,810	3,810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97	호명읍 산합리	956 - 5	도로	1,924.8	265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복로35						
98	호명읍 산합리	957 - 1	답	1,069.3	1,069.3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99	호명읍 산합리	957 - 2	답	1,151.8	1,151.8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00	호명읍 산합리	957 - 3	답	1,993.2	1,993.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01	호명읍 산합리	957 - 4	답	4,146.8	4,146.8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102	호명읍 산합리	957 - 5	답	4,039.4	4,039.4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03	호명읍 산합리	957 - 6	구거	1,656.2	1,633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 북로35				
104	호명읍 산합리	957 - 7	구거	180.2	180.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05	호명읍 산합리	957 - 8	도로	2,352.2	2,352.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 북로35				
106	호명읍 산합리	957	답	1,183.5	1,183.5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107	호명읍 산합리	958 - 1	답	521	521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08	호명읍 산합리	958 - 2	답	1,828.2	1,828.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09	호명읍 산합리	958 - 3	답	2,493.6	2,493.6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10	호명읍 산합리	958 - 4	도로	2,997.9	2,997.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11	호명읍 산합리	958	답	3,489.9	3,489.9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112	호명읍 산합리	959 - 3	답	2,861.2	539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113	호명읍 산합리	959 - 4	구거	1,474.5	309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 북로35				
114	호명읍 산합리	960 - 1	답	1,135.3	1,135.3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15	호명읍 산합리	960 - 2	답	3,249.2	3,249.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6	호명읍 산합리	960 - 3	답	4,709.1	4,709.1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소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17	호명읍 산합리	960 - 4	구거	2,000.2	2,000.2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소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복로35			
118	호명읍 산합리	960 - 5	구거	2,442	2,442	한국농어촌공사	주소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19	호명읍 산합리	960	답	4,469.7	4,469.7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소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20	호명읍 산합리	961 - 2	답	2,224.7	2,188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소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121	호명읍 산합리	961 - 12	답	2,240.1	1,616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소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22	호명읍 산합리	961 - 13	답	1,091.3	887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소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23	호명읍 산합리	961 - 16	답	564	215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소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24	호명읍 산합리	961 - 18	도로	603.6	504	한국농어촌공사	주소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25	호명읍 산합리	961 - 20	도로	809.7	735	한국농어촌공사	주소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26	호명읍 산합리	961 - 22	구거	597.8	384	한국농어촌공사	주소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27	호명읍 산합리	961 - 24	구거	121.7	87	한국농어촌공사	주소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28	호명읍 산합리	961 - 25	구거	37.1	1	한국농어촌공사	주소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9	호명읍 산합리	962	답	1,072.2	1,072.2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130	호명읍 산합리	962 - 1	답	3,211.5	3,211.5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131	호명읍 산합리	962 - 2	답	3,626.2	3,626.2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32	호명읍 산합리	962 - 3	답	1,815.4	1,815.4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133	호명읍 산합리	962 - 4	답	1,727.5	1,727.5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34	호명읍 산합리	962 - 5	답	3,243.7	3,243.7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35	호명읍 산합리	962 - 6	도로	477.2	477.2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36	호명읍 산합리	962 - 7	구거	994.5	994.5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37	호명읍 산합리	963 - 6	구거	1,387.8	583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 북로35					
138	호명읍 산합리	963 - 8	도로	1,485.9	3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 북로35					
139	호명읍 산합리	963	답	3,039.9	1,174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40	호명읍 산합리	1085	목장 용지	302	44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41	호명읍 산합리	1086	전	339	230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2	호명읍 산합리	1087	대	745	394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43	호명읍 산합리	1088	대	583	372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44	호명읍 산합리	1089	답	1,829	1,829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45	호명읍 산합리	1090	도로	208	208	국(국토부)					
146	호명읍 산합리	1091	답	661	661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47	호명읍 산합리	1092	전	1,0530	303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48	호명읍 산합리	1097	구거	406	352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 북로35					
149	호명읍 산합리	1099	도로	157	78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50	호명읍 산합리	1100	답	2,083.8	2,083.8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51	호명읍 산합리	1101	답	1,133	1,109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52	호명읍 산합리	1102 - 1	답	912	910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153	호명읍 산합리	1103	도로	220	220	국(농림부)					
154	호명읍 산합리	1104 - 1	도로	289.6	284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 북로3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55	호명읍 산합리	1105	구거	166.3	166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 북로35				
156	호명읍 산합리	1106 - 1	답	1,157.3	394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57	호명읍 산합리	1108 - 1	구거	731.8	53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58	호명읍 산합리	1577	답	497	5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159	호명읍 산합리	산105	임야	397	397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 길7(옥산동)				
160	호명읍 산합리	산106 - 3	구거	99	9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161	호명읍 산합리	산106 - 4	구거	298	29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162	호명읍 산합리	산106 - 9	구거	692	56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163	호명읍 산합리	산108 - 3	구거	198	198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행 북로35				
164	호명읍 산합리	산109 - 3	임야	2,380	2,106.5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산시옥산동73 1경북개발빌딩				
165	호명읍 산합리	산152	구거	21	21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경상북도 고시 제2025-200호

영주시 택시 자율감차계획 고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영주시 택시 자율감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영주시 택시 자율감차계획

나. 감차기간 : 2020. 1월 ~ 2029. 12월

다. 감차규모 : 128대(일반 40, 개인 88)

라. 감차보상금액 : 일반 55,000천원/대, 개인 110,000천원/대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미포함

2. 연도별 감차계획

가. 감차규모

(단위 : 대)

구분	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계	128	0	14	19	7	7	14	18	17	17	15
일반	40	0	14	19	0	0	7	0	0	0	0
개인	88	0	0	0	7	7	7	18	17	17	15

나. 감차재원 확보 계획

(단위 : 대, 천원)

연 도	감차대수	합 계	국비	지방비	기 타
계	128	10,750,980	444,600	9,061,380	
2020	-	-	-	-	
2021	14	705,000	31,200	523,800	
2022	19	902,500	42,900	709,600	
2023	7	770,000	27,300	637,700	
2024	7	770,000	27,300	637,700	
2025	14	646,190	54,600	591,590	
2026	18	1,671,660	70,200	1,601,460	
2027	17	1,833,790	66,300	1,512,490	
2028	17	1,833,790	66,300	1,512,490	
2029	15	1,618,050	58,500	1,334,550	

※ 지방비는 감차재단의 인센티브 배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경상북도 고시 제2025-201호

어미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어미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계획(변경)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외 7개리 일원을 사업 구역으로 하고 배수장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방지 및 영농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외 7개리 일원
- 수혜면적 : 112.1ha
- 사업계획개요
 - 배 수 장 : 1개소(Q=5.0m³/s)
 - 배 수 로 : 3조 L=1.235km
 - 복 토 : 1.22ha(1,800m³)

3. 사업비소요액 : (당초)12,506백만원 → (변경) 12,516백만원

4. 사업 예정기간 : (당초)2021. ~ 2025.(5개년) →
(변경) 2021. ~ 2026.(6개년)

5. 사업의 효과

- 편익비용비율(B/C) : 1.04%(4.5%할인시)
- 내부투자수익율(I.R.R) : 4.8%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

7. 기 타 : 관련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054-720-701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총 계			24필지		248,578	24,153						
1	포항	연일	생지	340	답	1,157	1,1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 105-1401 (야탑동, 탐마을)	농협은행주 식회사 (포항지부)			근저당권	
2	포항	연일	생지	341	답	2,975	2,9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 105-1401 (야탑동, 탐마을)	농협은행주 식회사 (포항지부)			근저당권	
3	포항	연일	생지	342	답	3,025	3,0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로 62, 101-404 (효자동, 테라비아타인지곡)	김홍엽				
4	포항	연일	생지	411-4	답	2,275	2,27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종무로169번길 25(고기동)	김홍진				
5	포항	연일	생지	411-5	답	2,450	2,450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6 효자그린아파트 233동 1504호	김병두				
6	포항	연일	생지	109	답	1,464	92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57-7 명성강변 가동 205	이병우				
	포항	연일	택전		답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97 거양 202호	김석만	연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 군	읍 면	리 동			성명 또는 명칭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7	포항	연일	택전	110	답	985	47	김석만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97 거양 202호	연일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8	포항	연일	생지	411-17	도	3,635	250	포항시					
9	포항	연일	생지	411-9	도	1,258	85	포항시					
10	포항	연일	생지	496-9	구	1,154	26	농림식품부					
11	포항	연일	생지	483-4	도	688	102	환경부					
12	포항	연일	생지	483-1	천	218	17	환경부					
13	포항	연일	생지	482-3	천	1,754	584	환경부					
14	포항	연일	생지	482-1	천	2,904	233	환경부					
15	포항	연일	생지	481	천	1,173	301	환경부					
16	포항	연일	생지	501	천	49,966	1,126	환경부					
17	포항	연일	생지	411-25	구	191	191	한국농어촌 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 군	읍 면	리 동			성명 또는 명칭	소 주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종 류및내용		
18	포항	연일	생지	411-2	구	1,924	710	한국농어촌 공사					
19	포항	연일	생지	411-3	대	2,309	2,309	한국농어촌 공사					
20	포항	연일	생지	343	구	3,091	411	한국농어촌 공사					
21	포항	연일	생지	411-26	구	190	190	한국농어촌 공사					
22	포항	연일	생지	496	구	58,846	425	한국농어촌 공사					
23	포항	연일	택전	658-1	구	40,595	1,701	한국농어촌 공사					
24	포항	연일	연일	427	구	64,351	3,471	한국농어촌 공사					

경상북도 고시 제2025-202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경상북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비상연락망(사무실)	지정일자
1	경북개발공사	514-82-07454	경북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	054-650-3121	2025. 6. 2.
2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505-81-69070	경북 경주시 보문로 46(신평동)	054-740-7313	2025. 6. 2.

경상북도 고시 제2025-20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실시계획 승인 일자 : 2025. 5. 26.

2.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
 - 성 명: 포항시장
 - 주 소: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3. 공사내용 : 콘크리트 포장 깨기 후 반파옹벽 설치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2025. 5월
 - 준공예정일 : 2025. 9월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216호

2025년 경상북도 민원만족도 조사(상반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2025년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실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공일자 : 2025. 6. 4.(수)

2. 제공받은 기관 : (주)에이스리서치

3. 제공의 법적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4항

4. 이용목적

-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경북도청 민원서비스를 이용한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측정 설문조사에 이용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2024. 11. ~ 2025. 4월 기간 중 행정기관에 방문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및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6.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5년 민원만족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5년 11월 예정)

경상북도 공고 제2025-122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자
540524 (513-81-56348)	주식회사 이지네트워크 (EZ Network CO.,LTD) (이기택)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6길 53-26 (공단동)	2025.05.26.

끝.

2025년 6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25-122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자
540523 (506-81-24381)	대경파워텍 주식회사 (배용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147번길 5, 1층(해도동)	2025.05.26.

끝.

2025년 6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25-122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자
540525 (250-86-01011)	이다웰 주식회사 (IDWELL CO., Ltd.) (손기혁, 박현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제1벤처동213-비호 (지곡동, 포항테크노파크)	2025.05.26.

끝.

2025년 6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25-1230호

경상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제출안건 】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4. 2025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동의안
5. 경상북도와 히로시미현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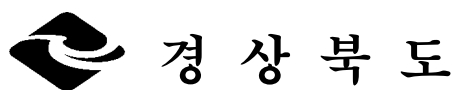
8.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4
----------	-----

제출일자 : 2025. 5.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개정이유

- 경제산업의 구조적 전환 및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경제전략 기획기능 강화 및 「환동해지역본부」 이전 완료에 따른 주소 변경

2. 주요내용

- 경제부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 신설에 따른 공항투자본부 분장사무 조정 (안 제9조)
 -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국내·외 투자유치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등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 「환동해지역본부」 이전 완료에 따른 위치 변경(안 제38조의2)
 - “용흥로90에 한시적으로 둔다.” → “동부청사로 2에 둔다.”

3. 개정조례안 : 붙임**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민자활성화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민자활성화과-3032(2025. 5. 20.)호

나. 법제심사(법무혁신담당관) : 별도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부패유발 요인 없음

§감사관-7597(2025. 5. 20.)호

라.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5552(2025. 5. 20.)호

마. 예산 수반사항(예산담당관)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바. 입법예고 결과

- 1)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2. ~ 5. 25.
- 2) 입법예고 방법 : 도보 게재
-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투자유치”를 “투자유치 및 투자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용흥로 90에 한시적으로”를 “동부청사로 2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의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공항투자본부) 공항투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2. (생 략)</p> <p>3.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p> <p>4. <u>민간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등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u></p> <p>5. 6. (생 략)</p> <p>제38조의2(설치) ① (생 략)</p> <p>②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에 <u>한시적으로</u> 둔다.</p>	<p>제9조(공항투자본부)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투자유치 및 투자지원</u>----- -----</p> <p>〈삭 제〉</p> <p>4. 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p> <p>제38조의2(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동부청</u> <u>사로 2에</u> -----.</p>

관련법령발취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 본청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이 조례안은 분장사무 조정 등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참고)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생략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주사 이재성(054-880-2123)

"잇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1. 관련근거 : 정책기획관-6246(2025. 5.20.)호

정책기획관-6247(2025. 5.20.)호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전략 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분장사무 조정 및 환동해지역본부 이전 완료에 따른 주소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없으므로, <p>「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p>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p>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증원(8명)에 따라 5년간('25~'29) 총 37억 2,919만원 정도의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함</p> <p>소요비용은 '202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하여 추계한 바, 담당부서의 비용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p>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분장사무의 조정과 119안전센터 명칭·위치·센터장 직급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없으므로, <p>「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p>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정원 내 직렬·직급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없으므로, <p>「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p>

끝.

예 산 담 당 관

주무관 권오순 예산담당관 차순애 전결 2025. 5. 20.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6623 (2025. 5. 20.) 접수 정책기획관-6264 (2025. 5. 20.)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2 팩스번호 054-880-2189 / jovi271@korea.kr / 비공개(5)

"경북을 경험할 시간, 2025 경북방문의 해"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985
번 호	

제출일자 : 2025. 5.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정원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초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정원조정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960명 → 7,968명 (+8)(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2,288명 → 2,296명 (+8)
- 소방공무원의 정원 : 5,489명 (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7명 (변동 없음)
-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 22명 (변동 없음)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 (변동 없음)

나. 정원 변동내역

- 산불 피해 복구 등 도정현안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조정 : +8명

- 일반직 공무원 : 4급 +2, 5급 이하 +6
- 행정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도의회 직급 상향
- 일반직 공무원 : 4급 △1 → 3~4급 +1

다.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정무직 공무원 : 3명(변동 없음)
- 일반직 공무원 : 2,172명 → 2,180명(+8)
 - 1급 : 1명(변동 없음)
 - 2급 : 2명(변동 없음)
 - 2~3급 : 2명(변동 없음)
 - 3급 : 15명(변동 없음)
 - 3~4급 : 2명 → 3명(+1)
 - 4급 : 103명 → 104명(+1)
 - 5급 이하 : 2,031명 → 2,037명(+6)
 - 전문경력관 : 16명(변동 없음)
- 별정직 공무원 : 16명(변동 없음)
- 연구직 공무원 : 245명(변동 없음)
- 지도직 공무원 : 31명(변동 없음)
- 소방직 공무원 : 5,489명(변동 없음)
- 경찰직 : 4명(변동 없음)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9조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민자활성화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민자활성화과-3032(2025. 5. 20.)호

나. 법제심사(법무혁신담당관) : 별도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부패유발 요인 없음

§감사관-7597(2025. 5. 20.)호

라.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5555(2025. 5. 20.)호

마. 예산 수반사항(예산담당관) : 추가 재정소요 예상

- 비용추계 첨부 사유서 : 붙임

바. 입법예고 결과

1)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2. ~ 5. 25.

2) 입법예고 방법 : 도보 게재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960명”을 “7,96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88명”을 “2,296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직 급 별									
합 계		7,968	-						
정 무 직		3	1					2	
일 반 직	소 계	2,180	-						
	1급	1							1
	2급	2	1			1			
	2~3급	2	1	1					
	3급	15	11		1	2			1
	3~4급	3	2	1					
	4급	104	71	10	4	10	8	1	
	5급 이하	2,037	-						
	전문경력관	16	-						
별 정 직	소 계	16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2	-						
연 구 직	소 계	245	-						
	연구관	45			44		1		
	연구사	200	-						
지 도 직	소 계	31	-						
	지도관	10			10				
	지도사	21	-						
소 방 직	소 계	5,489	-						
	소방정	31	7		24				
	소방령 이하	5,458	-						
경 찰 직	소 계	4	4						
	경 감	4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960</u>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2,288</u>명</p> <p>2. ~ 5.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7,968</u> 명-----.</p> <p>1. ----- <u>2,296</u>명</p> <p>2. ~ 5. (현행과 같음)</p>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7,960	-								합 계		7,968	-						
정무직		3	1					2		정무직		3	1					2		
일반직	소 계	2,172	-								일반직	소 계	2,180	-						
	1급	1							1											
	2급	2	1			1														
	2~3급	2	1	1																
	3급	15	11		1	2			1											
	3~4급	2	2	신설																
	4급	103	69	11	4	10	8	1												
	5급 이하	2,031	-																	
	전문경력관	16	-																	
별정직	소 계	16	-								별정직	소 계	16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2	-																		
연구직	소 계	245	-								연구직	소 계	245	-						
	연구관	45			44		1													
	연구사	200	-																	
지도직	소 계	31	-								지도직	소 계	31	-						
	지도관	10			10															
	지도사	21	-																	
소방직	소 계	5,489	-								소방직	소 계	5,489	-						
	소방정	31	7		24															
	소방령 이하	5,458	-																	
경찰직	소 계	4	4							경찰직	소 계	4	4							
	경감	4	4								경감	4	4							

관련법령발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⑥항 (생략)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6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호 (생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⑤항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내용

1. 재정수반요인

가.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인력을 확충(안 제2조)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1)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안 제2조)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968명으로 한다.

(단위 : 명)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960	7,968	+8	
집행기관의 정원	2,288	2,296	+8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119특수대응단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5,489	5,489	0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7	157	0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22	22	0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	4	0	

2. 비용추계 전제

가.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한다.

나.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2025년 3억8천7백7십2만원을 비롯하여 2029년까지 5년간 총 37억 2천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 : 2025~2029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소 계	3,729,195	387,720	798,703	822,664	847,344	872,764
일 반 직	3,729,195	387,720	798,703	822,664	847,344	872,764

* 202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및 연도별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하여 산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도비	일반회계	387,720	798,703	822,664	847,344	872,764	3,729,195
	특별회계						
	기 금						
사·군비							
민간							
기타							
합계		387,720	798,703	822,664	847,344	872,764	3,729,195

5. 부대의견

2025년도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일반직 : 96,930천원)를 기준으로 반기분을 적용하였으며, 매년 보수인상률은 2025년도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 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주사 이재성(054-880-2123)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가. 대 상

- 산불피해복구 대응을 위한 정원 증원 8명

나. 비용추계 방법

〈 비용 추계 방법 〉

- ▶ 공무원 : 1인당 인건비는 2025년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성

2. 공무원 정원의 총수(개정안 제2조)

가. 도에 두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고려사항 : 비용추계 범위에 대한 가정

-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매년 보수인상률 등에 따라 운영경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매년 인상되는 보수인상률은 2025년도 기준인 3%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실제 연도별 소요 경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 공무원 1인당 기준인건비 : 2025년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직	소 방 직	비 고
인 건 비	96,930	86,941	

3.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이상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표 3]에서와 같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37억 2천9백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경비 추정 : 2025~2029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소 계	3,729,195	387,720	798,703	822,664	847,344	872,764
일 반 직	3,729,195	387,720	798,703	822,664	847,344	872,764

* 202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및 연도별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하여 산정

* 도에 두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정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2025년도는 「202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추정

하였으며, 2026~2029년도는 보수인상률(3%)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정 경비는 실제 연도별 운영경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잇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경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1. 관련근거 : 정책기획관-6246(2025. 5.20.)호

정책기획관-6247(2025. 5.20.)호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전략 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분장사무 조정 및 환동해지역본부 이전 완료에 따른 주소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없으므로, <p>「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p>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증원(8명)에 따라 5년간('25~'29) 총 37억 2,919만원 정도의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함 소요비용은 '202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하여 추계한 바, 담당부서의 비용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분장사무의 조정과 119안전센터 명칭·위치·센터장 직급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정원 내 직렬·직급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예 산 담 당 관

주무관	권오순	예산담당관	진결 2025. 5. 20. 차순애
-----	-----	-------	------------------------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6623	(2025. 5. 20.)	접수 정책기획관-6264	(2025. 5. 2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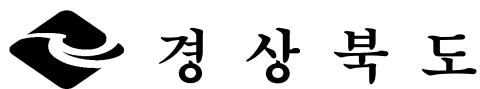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2 팩스번호 054-880-2189 / jovi271@korea.kr / 비공개(5)

"경북을 경험할 시간, 2025 경북방문의 해"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경 상 북 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의 안	986
번 호	

제출일자 : 2025. 05.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산 피해자에게 도세 감면을 통해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함.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감면대상자 : 특별재난지역 재산 피해자
- 나. 재산 피해자 지원
- 취득세는 산불 피해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면제
 - 등록면허세는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면허(건축 및 대수선 등)를 받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
 - 지역자원시설세는 재해 피해를 입은 재산에 부과되는 2025년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를 면제
- 다. 기타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감면

3. 감면동의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 나. 「지방자치법」 제47조
-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1. 제안이유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산 피해자에게 도세 감면을 통해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감면대상자

가.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재산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이하 “재산 피해자”라 함)

3. 감면내용

가. 재산 피해자 지원

1) 취득세

-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이하 “피해일”이라 한다)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건축물은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면허분 등록면허세

-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피해 재산을 대체하기 위해 면허(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등)를 받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피해 재산에 부과되는 2025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4.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경상북도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재산 피해자에 대해서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련법령발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경 상 북 도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987
------------	-----

제출일자 : 2025. 05.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2025년 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규모

(단위: 천원)

대상기관	사업건수	출자출연 예정규모	비 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개 사업	200,000	3년간 5억원

나. 출자시기 : 2025년

3. 사업내용 : 붙임

4. 관련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자·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고
계		1개 기관	1개 사업		
1	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엑스트라마일 라이콘 펀드 조성	200,000	

1] 엑스트라마일 라이콘 펀드 조성

출 예 정	자 액	200,000천원			
출 기	자 관	○ 기 관 명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대 표 : 이 문 락 (* 세부 현황 별첨①)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사 업 내 용					
출 필 요	자 성	○ 도내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유도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특화펀드 조성 필요			
사 업 개 요		○ 사업 세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 드 명 : 엑스트라마일 라이콘 펀드 • 결성기간 : 2025년~2032년(투자 3년 + 회수 5년) • 결성규모 : 50억원(경북도 5, 모태펀드 30, 청도군 5, 전주시 5, 운용사 5) • 운 용 사 : 엠와이소셜컴퍼니 •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참여한 이력이 있는 개인을 대표자로 하는 기업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내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 -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중 법인인 소상공인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의 성장을 통한 지역대표 브랜드 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자금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경북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 			
출 근 거·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검 토 의 견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 발굴 육성을 위한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환경 마련 가능 ○ 지역 소상공인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펀드 출연금 지원 필요			
소 관 부 서	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	부서장	담당사무관	담당자	전화
		김영섭	김효정	김동민	2632

참고1

운용사(MYSC) 현황 및 분야별 투자계획


운용사(MYSC) 현황

□ 일반현황


- 설립 일 : 2011. 11. 25.
- 대 표 자 : 김정태
- 소 재 지 : 서울 성동구 연무장13길 8, 메리히어 6층
- 운용실적 : 21개 조합 962억원 (2025. 3.현재)

□ 주요현황

-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전문 AC 등록
-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LIPS 운용사 선정
- 2015년부터 순이익 달성, 2022년부터 매출 100억원 이상 기록
- 2024년 매출액 약 120억원, 영업이익 약 13억원 달성

□ 경북도 투자 현황

- (5개 시군, 6개사 / 23.5억원) 경주 이옴텍, 영주 남선마을, 디에스 푸즈, 청도 시그널케어, 칠곡 위크비자, 울릉 울릉브루어리,


분야별 투자계획

분 야	비 중	내 용
라이프스타일	40%	기존 생활양식에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소비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30%	지역 문화, 특산물 등에 창의성 있는 콘텐츠를 입혀 차별화된 생산·소비·문화가치를 창조하는 소상공인
온라인셀러 / 지역상권	30%	전통적인 제조 분야에 온라인 접목해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는 소상공인

참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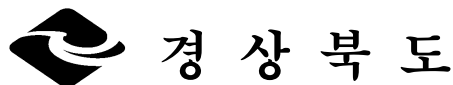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소재지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 188)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대표전화	일반 : 054)470-2614						설립주체	미래창조과학부 ↓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FAX : 054)470-2699														
			URL :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 10. 재단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2014. 11. 법인 설립 등기 2014. 12. 개소식 2015. 2.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2015. 7. 대표권자 변경(이사장 장순홍→대표이사 김진한) 2016. 12. 제2대 대표이사 선임(김진한 연임) 2020. 6. 제3대 대표이사 선임(이경식 신임) 2022. 9. 제4대 대표이사 선임(이문락 신임) 						기관형태		비영리법인								
인원현황 (‘24.12월 현재)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일반	연구	전문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계약	기타	소계	기간제	단시간
정원	19	1	18	18	-	-	-	-	-	-	-	-	-	15	15	-	3
현원	35	1	16	16	-	-	-	-	-	-	-	-	-				

임원	직책	성명	주요경력						
	이사장 (선임직)	강병하	현) (주)한부솔루션 대표이사						
	이사 (당연직)	김성훈	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장						
	〃	최영숙	현)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						
	〃	정기환	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이문락	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	전필규	현) 삼성전자(주) 창의개발센터장						
	이사 (선임직)	이재현	현) 대구대학교 창업중심대학 단장						
	〃	하인성	현)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고병철	현) 포스텍기술지주 대표이사						
	감사 (선임직)	양태현	현) 중정회계법인 이사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형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 붐 조성 및 창업교육 •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ICT융복합 신산업 육성 • 창업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촉진 및 지역투자 생태계 조성 								
자본금(백만원) (2024년말 기준)	10.1								
재무상태(백만원) (2024년말 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 산	비유동자 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 채	계	자본금	잉여금 등
	2,313	708	1,605	1,805	555	1,250	508	10	498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広島県)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広島県)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988
----------	-----

제출일자 : 2025. 05.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 히로시마현과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2. 자매결연 체결 지역

지역명	인구(만명)	면적	행정구역	비고
일본국 히로시마현	271만명	8,479km ²	14개 시(市) 9개 정(町)	

3. 사업내용

가. 추진배경

- 금년 한일수교 60주년 및 광복 80주년 등 평화의 분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한일간 지속가능한 우호관계 구축 및 문화·관광교류 확대의 필요성 대두

- 양 도시 간의 우호 증진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경제·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 각종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 도모
- 2024. 1. 29. 히로시마현과 우호도시 교류 체결 후, 공무원, 청소년, 문화, 교육교류를 비롯하여 히로시마 최대 축제인 「히로시마플라워 페스티벌」에 경북상품홍보관 운영, 전통민속놀이 체험, K-팝 등 다양한 문화 홍보로 교류협력 분위기 조성
- 지난 2005년 시마네현과 자매결연 파기 이후, 20년 만에 일본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한층 성숙한 우호증진과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의 기반 마련
- ※ 시마네현과 1989.10.6. 자매결연 체결, 2005.2.22.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으로 자매결연 파기(2005.3.16)

나. 사업경과

- 2020. 1. : 駐히로시마총영사 명의, 경상북도와 교류희망 공문 접수
- 2020. 8. : 「제5회 히로시마주니어국제포럼」 도내 고교생(1명) 참가(1회차)
- 2020.10. : 경상북도 지사 명의, 자매결연 희망 서한 발송
- 2020.12. : 경상북도·히로시마현·총영사관 화상회의(1회차)
- 2021. 5. : 「제6회 히로시마주니어국제포럼」 도내 고교생(1명) 참가(2회차)
- 2021. 7. : 경상북도 「글로벌청소년해양포럼」 히로시마고교생(11명) 참가

- 2021. 8. : 경상북도·히로시마현·총영사관 화상회의(2회차)
- 2022. 3. : 히로시마현내 대학생(2명) 영남대학교 어학연수(1년간)
- 2022. 4. : 경상북도·히로시마현·총영사관 화상회의(3회차)
- 2023. 6. : 외교통상과장 등 히로시마현 방문, 교류추진 협의
- 2023. 7. : 「청소년 글로벌문화체험캠프」 히로시마현 대학생(5명)참가
- 2023. 8. : 「제8회 히로시마주니어국제포럼」 도내 고교생(1명) 참가(3회차)
- 2023.10. : 히로시마현 국제과장 등 도 방문, 교류추진 협의
- 2023.10. : 도내 고교생(7명) 등 히로시마현 방문, 고교 및 학생교류(1회차)
- 2024.1.29. : 경상북도지사, 히로시마현 방문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 2024. 3. : 히로시마현 고교생(8명) 등 경상북도 방문, 고교 및 학생교류(2회차)
- 2024. 5. : 「히로시마플라워페스티벌」 참가, 경북 홍보부스 운영
- 2024. 5. : 히로시마현 의회의장단(21명) 경상북도 및 의회방문
- 2024. 8. : 「청소년 글로벌문화체험캠프」 히로시마현 대학생(3명) 참가
- 2024. 8. : 「제9회 히로시마주니어국제포럼」 도내 고교생(1명) 참가(4회차)
- 2024.11. : 도내 고교생(12명) 등 히로시마현 방문, 고교 및 학생교류(3회차)
- 2024.12. : 외교통상과장 등 히로시마현 방문, 교류추진 협의
- 2025. 3. : 히로시마현 고교생(12명) 등 경상북도 방문, 고교 및 학생교류(4회차)
- 2025. 5. : 「히로시마플라워페스티벌」 참가, 경북상품홍보관 운영

다. 자매결연 체결 : 2025. 7월 중(예정)

라. 기대효과

- 한일수교 60주년 및 광복 80주년, APEC정상회의 개최 등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해를 맞아, 전통과 문화의 중심지인 경상북도와 평화의 상징인 히로시마현의 교류는 지방외교 차원에서 평화와 협력의 모범 사례 제시
- 양 지역은 제조업과 농업, 관광 등 공통점이 많아 기업 및 경제인 교류, 일본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
- 학교 및 고교생, 대학생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적 상호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미래세대 간 우호증진에 기여

4.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한다.

다.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지역 선정)① 도지사는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지역을 선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지역은 양쪽이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서로 이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한다.

③ 우호교류지역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교류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지역으로 선정하며, 향후 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된 경우 자매 결연을 맺을 수 있다.

5. 참고사항

가. 일본 히로시마현 개황(붙임 1)

나. 자매결연 협정서(안) (붙임 2)

붙임 1 **히로시마현 개황**

□ 일반 현황

- 위 치 : 일본 혼슈(本州) 남서부
 세토나이(瀬戸内)해에 면한 현
- 면적(km²) : 8,479km²
- 인 구 : 270.9만명(2025년)
- 행정구역 : 14市 9町
- 현청소재지 : 히로시마시(広島市)
- 기온/강수량 : 15.7℃ / 2,355mm



□ 경제 현황

- 산 업 : 메이지 시대 이후, 해군의 군사시설이 많아 군수산업 중심 공업 발전
 ·구레市 : 조선,기계,펄프 ·오타케市 : 석유화학,제지,펄프
 ·후쿠야마市 : 철강,전기기계,고무,화학 ·미하라市 : 섬유,차량,시멘트
 ·오노미치市 : 조선공업 발달
- 농 업 : 감귤류, 구약(곤약)나물, 곶꿀(등심초) 및 앞담배, 밤 및 육우 사육
- 임 업 : 대체로 부진하나 송이버섯 재배 多
- 수산업 : 히로시마만의 굴 및 해안 일대의 김양식 발달, 연안어업은 영세
- 공예품 : 종이, 재봉바늘, 솟돌, 줄칼, 게다(왜나막신), 다다미 걸뚝자리 등

□ 역 사

- 나라시대부터 빈고國과 아키國으로 나뉘었으며,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
- 히로시마市는 슈고쿠(中國)지방의 전통적인 중심지이자 세키가하라 전투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하게 된 전투)이전까지 모리(森)씨의 근거지
- 에도시대(1603 ~ 1867)에는 히로시마 번(藩)이라 하여 영주인 아사노(淺野)씨가 지배

□ 특 징

- 포항시↔후쿠야마시(1979) / 대구광역시↔히로시마시(1997) 자매결연 체결
-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4분, 히로시마시에 미군의 원자 폭탄 투하

붙임 2	자매결연 협정서(안)
------	-------------

대한민국 경상북도-일본국 히로시마현

자매결연 협정서(안)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일본국 히로시마현은 양 지자체간 상호 협력과 우호증진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다.

1. 양 지자체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교육, 청소년, 인재육성, 문화, 관광 및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2. 양 지자체는 고위급 인사 및 관계자의 방문을 정례화하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양 지자체의 유관기관 또는 민간이 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한다.
3. 본 협정서는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협정서는 2025년 경상북도에서 체결하고 한국어와 일본어로 2부 작성하여 양 지자체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각 협정서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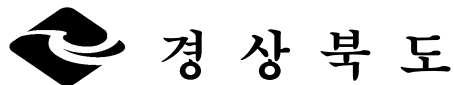
대한민국 경상북도
지사 이 철 우

일본국 히로시마현
지사 유자키 히데히코

2025년 7월 일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989
번 호	

제출일자 : 2025. 05.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제1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 세입 결산액 14조 2,321억 1천 7백만원
- 세출 결산액 13조 3,139억 8천 2백만원
- 잉여금 9,181억 3천 5백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907억 4천 8백만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74억 1천 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99억 7천 2백만원임.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12조 6,396억 2천 1백만원
- 세출 결산액 11조 7,703억 6천 6백만원
- 잉여금 8,692억 5천 6백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784억 1천 6백만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71억 6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36억 8천만원임.

(2) 기타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1조 5,924억 9천 5백만원
- 세출 결산액 1조 5,436억 1천 6백만원
- 잉여금 488억 7천 9백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23억 3천 2백만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2억 5천 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2억 9천 2백만원임.

나. 기금결산(지역개발기금 등 17종)

-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9,650억 9천 1백만원
- 당해 연도 조성액 4,994억 9천 4백만원
- 당해 연도 사용액 5,727억 1천만원
- 당해 연도 말 조성액 1조 8,918억 7천 5백만원임.

다. 채권결산

-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9,611억 1천 6백만원
- 당해 연도 발생액 4,518억 4천 3백만원
- 당해 연도 소멸액 4,456억 5천 6백만원
- 당해 연도 말 현재액 1조 9,673억 3백만원임.

라. 채무결산

-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4,716억 2천 8백만원
- 당해 연도 발행액 3,127억 7백만원
- 당해 연도 상환액 3,303억 4천 9백만원
- 당해 연도 말 현재액 1조 4,539억 8천 6백만원임.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예산액 418억 9천 4백만원
- 지출결정액 330억 8천 1백만원
- 지출액 187억 6천 3백만원
- 이월액 134억 9천 2백만원
-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 8억 2천 6백만원임.

3.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 별첨

결산서 및 첨부서류, 성인지 결산서, 세입부분 설명자료,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지출내역서, 성과보고서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1항

관련법령발취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회의 정수는 7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선임절차) ①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90
------------	-----

제출일자 : 2025. 05.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21.6.30.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적시 심의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사전 심의가 의무화됨.
-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보호조치 조항(필요한 경우 보호조치·퇴소조치 시에도 사후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함)은 「아동복지법」 개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어 우선보호조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보호조치 조항 삭제(안 제7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4, 제21조4, 제21조5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법제심사 : 별도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4. 9. 23. ~ 10. 13.(20일간)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예산관련)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우선보호조치)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p>	<p>〈삭 제〉</p>

관련법령발취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12. 29., 2023. 7. 18.>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절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9.]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6. 9. 22.]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1. 6. 29.>]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결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우선보호조치)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0.>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는 우선보호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도의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본 조례는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그 외 예산 규모 예측이 어려운 경우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저출생극복본부 교육청소년과 지방행정주사 조민근(054-880-4542)

"남은 사랑, 키우니 행복"



경 상 북 도



수신 교육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교육청소년과-3524(2024.9.10.)호와 관련입니다.
-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는 우선 보호조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예 산 담 당 관 의

주무관 윤종모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전결 2024. 10. 16. 차순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3090 (2024. 10. 16.) 접수 교육청소년과-5631 (2024.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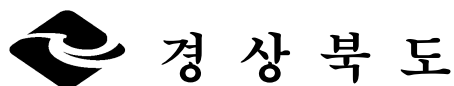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풍천면 도청대로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369 / lackof2pro@korea.kr / 비공개(5)

"아이중 행복이중 희망이중 미래중"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991
-----------	-----

제출일자 : 2025. 05.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정부의 각종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와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기준(2자녀 이상)을 반영하고자 함.
- 기존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각종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와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의 자녀로 규정되었으므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도록 함 (안 제2조 제4호)

- 1) 제2조(정의) 제4호의 ‘다자녀 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개정(셋→둘)
- 2) 현재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준용하여 변경

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도록 함 (안 제2조 제2호 및 제4조)

- 1) 제2조(정의) 제2호의 대학생에 대한 정의 중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제4조(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로 이동하여 용어의 정의 명확화
- 2) 제4조(지원 대상)에 지원 자격을 구체화시키고 ‘가구소득분위’를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대체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가. 예산관련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예산담당관-3503(2025. 3. 12.)
- 나.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민자활성화과-1343(2025. 3. 7.)
-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관-3796(2025. 3. 11.)
-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2821(2025. 3. 10.)
- 마.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2025. 3. 24. ~ 4. 13.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바. 비용추계서(예산관련)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 사.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입법 선행절차 : 선행절차 별도 필요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미취업 졸업생 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셋”을 “둘”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재단”을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단”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가구소득분위”를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졸업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u>미취업 졸업생 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u> 3. (생 략) 4. “다자녀 가구”란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p>제4조(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p> <p>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u>재단</u>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u>가구소 득분위에 따라</u>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u>미취업 졸업생</u> ----- 3. (현행과 같음) 4. -----<u>둘</u>----- ----- <p>제4조(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p> <p>-----<u>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단</u>-----<u>다만, 도지사는 학자금 지원구간</u>-----</p>

관련법령발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생략)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생략)

제16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생략)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6. 22.〉

1. 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2. 학자금 지원 자격
3. 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3. 의료급여 (생략)

□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생략)

□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을 말한다.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제2조(정의)

- 4. “다자녀 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지원 대상의 기준에 다자녀 가구뿐 아니라 경북·대구 소재 대학 재학 등 기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의무 지원이 아닌 신청자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실 지원대상의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지방시대정책국 대학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선 (054-880-4561)

"잇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수신 대학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대학정책과-1764(2025.3.6.)호 관련입니다.
-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 등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셋'에서 '둘'로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학자금 이자 지원근거의 임의성 및 학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추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 다만,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결정할 시, 지원대상 목표 설정 등 지원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전에 반드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예 산 담 당 관 의

주무관 **윤종모** 예산총괄담당 **최현숙** 예산담당관 **차순애** 전담 2025. 3. 12.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3503 (2025. 3. 12.) 접수 대학정책과-1974 (2025. 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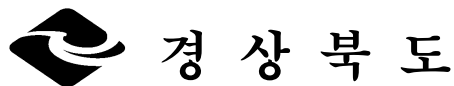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풍천면 도청대로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369 / lackof2pro@korea.kr / 비공개(5)

"경북을 경험할 시간, 2025 경북방문의 해"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992
-----------	-----

제출일자 : 2025. 05.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청사이전에 따라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청사 환경에 맞게 정비하여 인재개발원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사용료의 무상 사용기준 신설(안 제3조제4항)
- 나. 시설사용료기준표 금액 변경(안 별표)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민자활성화과-2087(2025. 4. 9.)

나. 법제심사 : 검토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관-5319(2025. 4. 7.)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4211(2025. 4. 14.)

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5. 4. 18. ~ 5. 07.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예산관련)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 붙임

사.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입법 선행절차 : 해당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이 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교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행사 및 프로그램

다.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이전 후 시설의 최초 사용일 부터 적용한다.

[별표]

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시 설 명	시설구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생 활 관	1인실	1인 1박	20,000원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대 강 당	293석	4시간	100,000원	"
대강의실(2실)	187석(화랑실)	4시간	50,000원	"
	122석(선비실)			
중강의실(2실)	76석(새마을실)	4시간	30,000원	"
	76석(호국실)			
소강의실(6실)	56석(3실)	4시간	20,000원	"
	40석(3실)			
전산강의실(2실)	65석(1실)	4시간	50,000원	"
	55석(1실)			
분임토의실(11실)	15석	4시간	10,000원	"
체육시설	운동장	4시간	30,000원	"

1.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초과 할 때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냉·난방비는 기준이용료에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① ~ ③ (생 략)</p> <p>④ <u>인재개발원장이 공익 또는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u></p>	<p>제3조(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u> 2. <u>민간이 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교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u> 나. <u>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행사 및 프로그램</u> <p><u>다.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현행] [별표]

시설사용료기준표단위 : 원

시설명 \ 기 간	당 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비 고
계	39,000	211,000	383,000	555,000	
생활관		133,000	266,000	399,000	
강당 (강의실)	39,000	78,000	117,000	156,000	

단, 냉난방비, 세탁수수료는 별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 [별표]

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시 설 명	시설구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생활관	1인실	1인 1박	20,000원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대 강 당	293석	4시간	100,000원	"
대강의실(2실)	187석(화랑실)	4시간	50,000원	"
	122석(선비실)			
중강의실(2실)	76석(새마을실)	4시간	30,000원	"
	76석(호국실)			
소강의실(6실)	56석(3실)	4시간	20,000원	"
	40석(3실)			
전산강의실(2실)	65석(1실)	4시간	50,000원	"
	55석(1실)			
분임토의실(11실)	15석	4시간	10,000원	"
체육시설	운동장	4시간	30,000원	"

1.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초과 할 때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냉·난방비는 기준이용료에 포함한다.

관련법령발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수반사항이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 성 자

-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지방방송통신주사 이한영(053-606-2733)

"잇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수신 경상북도인재개발원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교육지원과-2243(2025.4.7.)호와 관련입니다.
-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개정 등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예 산 담 당 관

주무관 **윤종모** 예산총괄담당 **최민숙** 예산담당관 **차순애** 전결 2025. 4. 14.

협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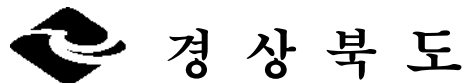
시행 예산담당관-4985 (2025. 4. 14.) 접수 교육지원과-2450 (2025. 4. 14.)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풍천면 도청대로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369 / lackof2pro@korea.kr / 비공개(5)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

의 안	993
번 호	

제출일자 : 2025. 05.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보문정수장 원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문관광단지 및 경주시 일부 지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사업 대상지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유 토지를 경주시에 매각하고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 적

- 경주시에 추진 중인 「보문정수장 원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과 관련하여, 신설 가압장 설치 구간에 포함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보문정수장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대상부지 내역

- 보문정수장 원수 비상공급 구축사업 관련 공사 소유 토지 매각

- 시설명 : 가압장(공공편익시설지구) 3필지, 1,426㎡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비고
1	경주시 북군동	175-4	전	520	520	
2		233-1	전	888	888	
3		236-19	전	18	18	
계				1,426	1,426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광단지입주계약규정」 제4조의1제1항
제4호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매각방법 : 입주지정, 매각가격 결정, 계약체결 등 분양계약 관련 세부 사항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광단지입주계약규정」에 따름.

- 근 거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광단지입주계약규정」 제1조, 제4조의1, 제5조, 제7조, 제8조

다. 경주시 가압장 신설 계획

- 사업명 : 경주시 탐동, 보문정수장 원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

- 사업목적 : 가뭄 시 보문정수장의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보문보조취수장 활용의 극대화과 원수 확보를 위한 도수관로 비상공급망(관로, 가압시설 등)을 구축하여 주요 정수장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도모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사업비 : 120억원(국비 84억원, 시비 36억원)
- 사업내용 : 형산강에 위치한 보문보조취수장에서 경주시 탑동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관로를 신설하고, 보문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가압장(취수펌프장)을 신설
 - 신설 가압장 설치 사유
 - 보문정수장의 수원은 덕동댐에서 전량 원수 취수 중으로 갈수기 등 비상시 보문보조취수장에서 보문정수장으로 원수비상공급 중에 있으며, 펌프양정이 부족하여 가압장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원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라. 기대효과

- 가압장 설치를 통한 보문관광단지 및 경주시 일부 지역 안정적 용수 공급 체계 구축
- 부지매각을 통한 공사 재정 수입 확보 및 자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관광단지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보로 투자 여건 개선

4. 관계법령

- 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3항
- 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광단지입주계약규정」 제1조, 제4조의1,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5조제1항제7호

경주시 가압장 신설 계획



경주시 탑동, 보문정수장 원수비상공급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신설 가압장 부지검토 및 매입협의 자료

2024. 10.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I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주시 탑동, 보문정수장 원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

□ 사업목적

- 하천복류수 상습적 취수불량지구와 가뭄시 보문정수장의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보문보조취수장 활용의 극대화과 원수 확보를 위한 원수관로 비상공급망(관로, 가압시설 등)을 구축하여 주요 정수장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6년간)

□ 사 업 비 : 120억원(국비84억원 시비 36억원)

□ 사업내용

- 원수공급관로 설치 및 정수공급관로 개선

- 설치 사유

- 향후 탑동정수장 증설(30,000m³/일 → 33,500m³/일) 계획으로 원수공급량이 부족하여 금회사업으로 원수공급망 구축

- 사업내용

- 포항↔경주간 광역상수도(정수공급관로) 일부 구간을 원수공급관로(2.8km, D500)로 활용
- 광역상수도(정수공급관로) 전용부분은 정수관로 신설(2.5km, D800)로 대체
 - ※ 과업지시서상 정수관로 신설(2.5km, D800)의 내역만 포함으로 설계변경시 원설계사(공명이엔씨) 지원 필요
- 원수공급관로(to,탑동정수장) 신설(3.2km, D500)

- 가압장 신설

- 신설 가압장 설치 사유

- 현재 보문정수장의 수원은 덕동댐에서 전량 원수 취수중임
- 갈수기 등 비상시 보문보조취수장 → 보문정수장으로 원수비상공급 중에 있으며 펌프양정이 부족하여 가압장 신설

구분	과업내용
1. 원수관로 설치	○ D500mm, 기존 정수관로 전용 L=2.8km, 원수관로 신설 L=3.2km
2. 정수관로 개선	○ D800mm L=2.5km
3. 가압장 신설	○ Q=20,000m ³ /일, 1개소

II 신설 가압장 예정부지 검토

가압장 편입토지조서

구 분	소 계 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지 번					
1	경주시 북군동	175-1	전	1,461	520	경상북도 큰화관광공사	가압장
2	경주시 북군동	233	전	2,030	662	경상북도 큰화관광공사	진흙임트 인브개량
3	경주시 북군동	236-17	전	5,765	18	경상북도 큰화관광공사	진흙임트
소계				9,256	1,200		
4	경주시 북군동	산16-4	임	1,785	343	국(국토교통부)	진흙임트 인브개량
소계				1,785	343		
합 계				11,041	1,543		

용지도



협의 공문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경주시



수 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경유)

제 목 경주시 탑동, 보문정수장 원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 편입부지(가압장) 협의 요청

-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주시 탑동, 보문정수장 원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구간 내 편입토지(가압장 부지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 사항을 반영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3. 현재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진행사항, 토지매각 가능 시기 및 가압장 부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리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내역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소유주
			공부면적	편입면적		
1	북군동 236-17	전	5,765	18	진출입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2	북군동 233	전	2,030	662	진출입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3	북군동 175-1	전	1,461	520	신설가압장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계			9,256	1,200		

※ 편입면적은 국토정보공사 분할측량시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협의자료 1부, 끝.



주무관 **장운필** 시설팀장 **김영기** 상수도과장 권결

협조자

시행 상수도과-16519 (2024.10.31.) 접수 관광개발실-7501 (2024. 11. 1.)

우 38099 경상북도 경주시 백령로 65-4,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동전동) / http://www.gyeongju.go.kr

전화 054-760-7832 / 전송 054-760-7535 / upjang81@korea.kr / 비공개

"생활속 안전위험요소! 안전신문고에 가입하여 신고!!"



대한민국 관광 반세기, 지속 가능한 미래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수 신 경주시장(상수도과장)

(경유)

제 목 협의 의견 회신(경주시 탐동, 보문정수장 원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가압장 편입부지건)

1. 상수도과-16519(2024. 10. 31.)호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경주시 탐동, 보문정수장 원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중 가압장 설치에 대한 의견을 불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불임 의견서 1부, 끝.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결재	팀장	윤호성	실장	전결 11/01 최규식
기안자	나세환	비조자	팀장	김동수
일상광시				김수
시행	관광개발실-7509	(2024. 11. 1.)	접수	()
우	38117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46(신평동)		/ https://www.gtc.co.kr	
전화	054-745-1680 /전송		/ ghksghks2760@igtco.or.kr	/ 공개

의견서

- ‘가압장’ 설치를 위해서는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이 선행되어야 함에따라 경주시에서는 변경을 위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시어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 ‘가압장’ 부지 및 ‘가압장 진입로’ 부지에 대한 공사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이 변경 고시되어야 감정평가 후 매각 가능성을 알려 드립니다.
- 경주시 북군동 233번지 분할 시 종래의 목적대로 전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소량의 잔여 토지에 금회 일괄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토지 내역

가. 주소 : 경주시 북군동 233번지

나. 지목 및 면적 : 약226㎡(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경주시



수 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경유)

제 목 경주시 탑동, 보문정수장 원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 편입부지(가압장) 의견 회신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광개발실-7509(2024. 11. 1.)호와 관련하여 『경주시 탑동, 보문정수장 원수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구간내 편입토지 중 북군동 233번지 및 산16-4번지에 대하여 잔여지 매수 검토결과 공사의견대로 잔여부지까지 매입 가능하오니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우관 **장운필** 상수도과장 재령 11/05
이재진

협조자

시행 상수도과-16733 (2024.11.05.) 접수 관광개발실-7577 (2024. 11. 5.)

우 38099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65-4, 맑은물사업본부 상 / http://www.gyeongju.go.kr
수도과 (동천동)

전화 054-760-7832 / 전송 054-760-7535 / upjang81@korea.kr / 비공개

"생활속 안전위험요소! 안전신문고에 가입하여 신고!!"


보문관광단지 고시문 中 세부시설 내역 발췌

경주시 고시 제2024-282호

보문관광단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5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문관광단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처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경 주 시 

1. 관광단지명 : 보문관광단지
2.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북군동, 손곡동, 신명동, 천군동, 천북면 일원
3. 지정일자 : 1975년 4월 4일
4. 승인면적 : 8,515,243㎡
5. 사업기간 : 1973년 ~ 2028년
6. 사업비 : 19,590.3억원
7.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8. 조성계획(변경)

가. 변경사유 :

- 1) 경주식물원 진입로 가감속차로 조성에 따라 기존 녹지 일부를 보문순환로로 변경
- 2) 보문관광단지 경계부 녹지 및 소공원(클러출공원)에 경주시에서 추진중인 수도공급설비(가압장) 신설
- 3) 호텔G부지 일부를 녹지로 변경, 도랑로 현행화 등 기존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나 변경근거 :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다. 변경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부지면적(㎡)	비율(%)		부지면적(㎡)	비율(%)	
합 계	8,515,243	100.00	-	8,515,243	100.00	
공공편익시설지구	816,537	9.59	증 6,647	823,184	9.67	
숙박시설지구	470,743	5.53	감 650	470,093	5.52	
상가시설지구	224,436	2.64	-	224,436	2.63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4,149,690	48.73	증 1,354	4,151,044	48.75	
기타시설지구	2,653,059	31.51	감 7,343	2,645,716	31.43	
기타시설지구	1,654,272	19.70	증 260	1,654,540	19.70	
합 계	999,507	11.73	감 7,611	991,896	11.65	

라. 세부시설별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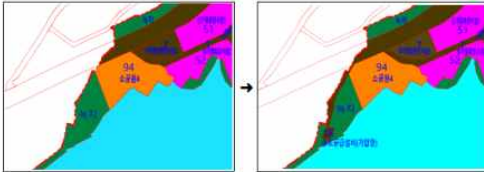
1) 공공편익시설지구 변경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최고높이(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편익시설지구	보문순환로	보문순환로	340,000	증 3,950	351,953	-	-	-	-
	도랑로	도랑로	4,906	증 1,634	6,480	-	-	-	-
	관림분수	관림분수	200	감 200	-	-	-	-	폐지
합 계	수도공급설비(가압장)	-	증 1,801	1,801	증 200	200	증 1층	1층	신설

■ 변경사유

- 경주식물원 진입로 가감속차로 조성에 따라 기존 녹지 일부를 보문순환로로 변경함
- 도랑로와 상가10 사이의 녹지 일부를 도랑로로 변경함(토지이용계획 현행화)
- 노후로 인하여 철거된 관림분수(보문호 고사분수) 삭제
- 경주시에서 추진중인 수도공급설비(가압장) 신설

【수도공급설비(가압장)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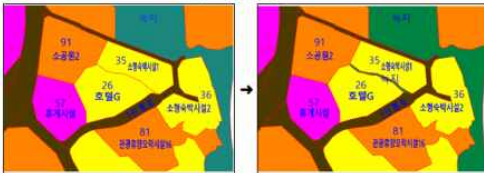
2) 숙박시설지구 변경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최고높이(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증감	기정	증감				
숙박시설지구	호텔A	호텔A	12,664	감 656	12,006	13,098	감 1,097	12,006	9층	-	9층

■ 변경사유

- 호텔G부지 현행화를 반영하여 일부를 녹지로 변경함
- 부지면적 변경에 따른 건축면적 조정

【호텔G (감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421	천군동	산339-12	임	126	5	한국농어촌공사	
422	천군동	산341-1	임	5,157	29	박재우	
423	천군동	산341-3	도	6,749	2,717	경주시	
424	천군동	산341-6	임	5,396	3,323	경주시	
425	천군동	산341-9	임	2,634	1,184	경주시	
426	천군동	산342-3	도	863	299	경주시	
427	천군동	산342-5	임	1,621	925	경주시	
428	천군동	산343-1	임	7,017	401	국(국토교통부)	
429	천군동	산343-3	도	4,256	1,791	국(국토교통부)	
430	천군동	산343-5	임	3,685	3,524	국(국토교통부)	
431	천군동	산343-7	임	687	246	국(국토교통부)	
432	천군동	산346-5	도	269	269	국(산림청)	
433	천군동	산350-18	임	462	462	국(기획재정부)	
434	천군동	산350-19	임	2,900	25	국(산림청)	
435	천군동	산350-33	임	55	41	국(기획재정부)	
436	천군동	산390-2	유	1,004	493	국(동림속산신평부)	
437	천군동	산391	구	12,069	403	국(국토교통부)	
합 계 (총 437필지)				1,372,059	351,553		

○ 도랑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1	천군동	1584-16	임	220	19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2	천군동	1584-27	도	4,995	4,934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3	천군동	1584-28	대	5,872	1,170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4	신명동	719-221	잡	174	174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합 계 (총 4필지)				11,261	6,469		

○ 수도공급설비(가압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1	북군동	175-1	전	1,451	520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2	북군동	233	전	2,030	888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3	북군동	산16-4	임	1,785	405	국(국토교통부)	
4	북군동	236-17	전	5,765	18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합 계 (총 4필지)				11,041	1,831		

관련법령발취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감독)

-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광단지입주계약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가 운영 관리하는 관광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입주하는 업체와의 입주계약조건 및 입주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1(분양방법)

① 단지 내 토지 및 시설물 분양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및 시설물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경쟁입찰을 하되, 임대의 경우에는 신문광고 또는 지역생활정보지에 공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입찰에 의한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차순위 입찰자와 낙찰금액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된 자를 입주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로 결정한 경우
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4.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매각할 때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입찰공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대상 물건에 관한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6. 매각예정가격에 관한 사항
7.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제5조(입주지정)

- ① 제4조의1에 의거 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입주자로 지정한다. 이때 전자입찰은 1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② 수의계약을 위하여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입주적격자를 지정한다.
- ③ 입주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경영개발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을 각 실·지사·단장등으로 한다.(단, 간사는 안건 상정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입주지정 통보를 할 때에는 입주대상 토지와 분양예정 가격(또는 임대가격), 계약체결 시기, 기타 필요사항을 동시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계약체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 및 시설물 분양 계약 [별지제4호서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되, 제5조 2항에 의한 수의계약일 경우 요청이 있을시 1회(10일)에 한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관 포함)에 한하여 사장이 계약체결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예정가격결정)

- ① 부동산의 분양 예정가격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산출평균금액 이상으로 입주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의 소요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임대료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임대료 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되, 유사한 다른 관광지의 실례와 수익성, 관리유지비 원가, 물가상승률, 토지의 용도 등을 참고하여 사장이 정할 수 있다.

1. 시설물 :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

2. 토 지 :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평가일로부터 입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④ 자산 매각을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12조(특약사항)

① 공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때에는 공사는 임대료를 증감시키거나 영업수익 또는 이익금에 대한 일정률(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의 단축, 조정시설 보수, 유지 등에 대한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계약체결 시 매매대금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공하지 못한 때는 기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③ 사업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의한 현금(자기앞 수표 포함) 또는 보증서 중 하나로 계약체결 시

까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반환 시에는 납부한 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착공 및 완공)

① 입주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공하여야 한다. 단, 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착공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를 말하고, 완공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말한다.

제25조(해제, 해지)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는 토지 및 시설물 분양계약을 해제(임대계약의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7. 입주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공하지 못한 때 (단, 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5-1233호

경상북도 문화유산 지정 예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거 아래 문화유산을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하오니,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 문화유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2

경 상 북 도 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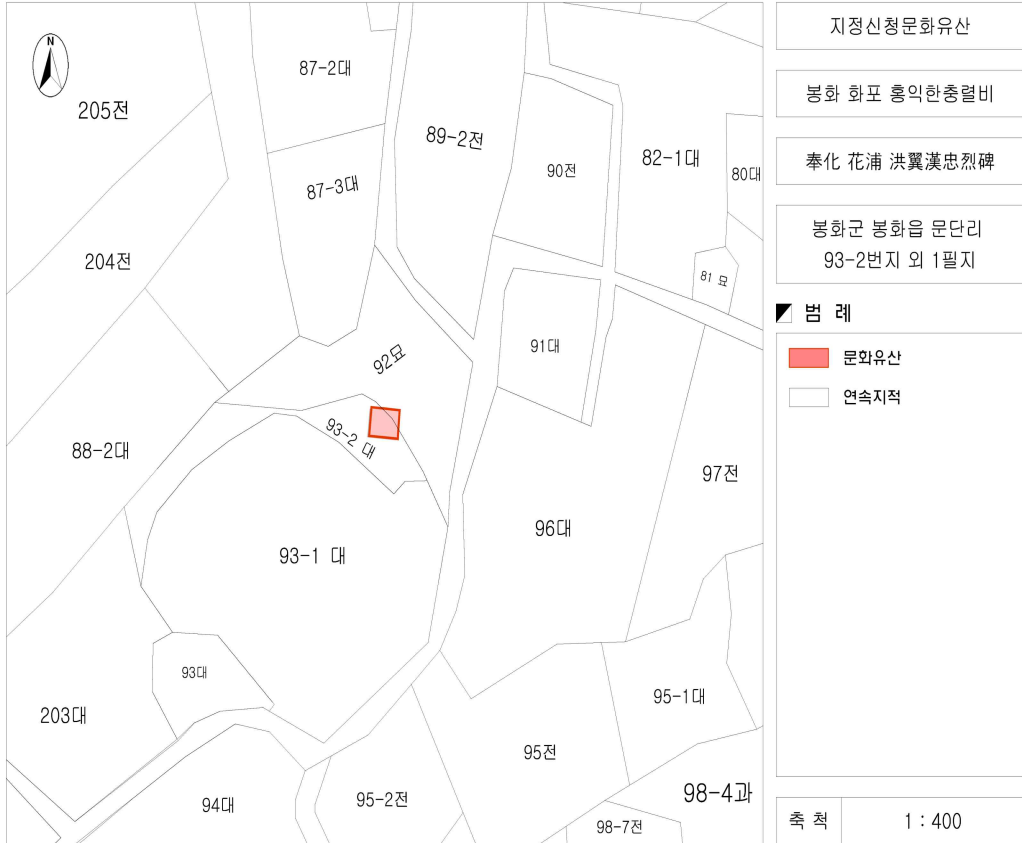
1. 지정예고 내용

종 별	문화유산명	수량	소유자	소재지	비고
문화유산 자료	봉화 화포 홍익한 충렬비 (奉化 花浦 洪翼漢 忠烈碑)	1기	홍▣▣▣ 홍▣▣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93-2	

2. 문화유산 지정·보호구역

문화유산명	소재지	지적현황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봉화 화포 홍익한 충렬비 (奉化 花浦 洪翼漢 忠烈碑)	봉화읍 문단리	92	묘	446㎡	3㎡	-	홍▣▣▣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93-1
		93-2	대	232㎡	13㎡	-	홍▣▣▣	

3. 문화유산 지정구역 지형도면



□ 지정예고 사유

○ 봉화 화포 홍익한 충렬비(奉化 花浦 洪翼漢 忠烈碑)

『봉화 화포 홍익한 충렬비』는 경상북도에 남아 있는 삼학사 가운데 한 명인 화포 홍익한의 유적으로 1683년(숙종 9)에 건립된 것이다. 현재 전국에 분포하는 홍익한 관련 유적(신도비, 묘비 등 포함) 가운데 건립 연대가 가장 빠르고, 규모도 크다. 1948년경 영동선 철도 개설로 인해 이전하였으나 지대가 낮아 습하고 협소하여 1982년 다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원위치가 아니란 점이 아쉽기는 하나 이동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관리가 잘 되어 훼손

된 부분이 거의 없다. 더욱이 홍익한은 병자호란 때 척화론을 주장하다 청나라에서 순절한 대표적 인물로, 그의 나라를 위한 충정과 선비정신은 후세에 널리 기리고 선양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홍익한의 활동이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남아 있어 학술적·교육적·문화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문화유산자료 지정대상으로 선정한다.

□ 지정예고내역 : 별지 참조

□ 지정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기 타

- 상기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북도청 문화유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54-880-3177 / 팩 스 : 054-880-3179
- 주 소 :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별지〉 지정예고내역

일련 번호	종별	명 칭	재료	구조· 형식· 형태	수량· 규모· 크기	기 타 특 징	비고
1	문화유산 자료	봉화 화포 홍익한 충렬비 (奉化 花浦 洪翼漢 忠烈碑)	화강암	비석	1기	-조선시대 (17세기 후반)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25-116호

경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고시

「수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수립한 『경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을 동법 제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경 주 시 장

1. 계획의 범위

- 목표연도 : 2035년
- 계획범위 : 경주시 행정구역 전지역

2. 계획(부분변경) 주요 내용

- 탐동정수장의 예비능력을 개선하여 건천정수장과 통합 계획수립
- 보문 보조취수장 ⇒ 탐동, 보문정수장 비상급수계획으로 원수확보
- 충효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관 시설개선 계획수립
- 경주시 급수구역별 유수율 개선 현안

3. 기 수립 수도정비 기본계획지표와 금회변경 지표 비교

○ 금회계획과 비교(변경없음)

당초 「경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1.03, 경주시)」 과 금회 계획의 주요 계획지표를 비교하면 2035년 기준으로 변경이 없으나, 경주시의 우수율 제고 사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계획목표 우수율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래 광역상수도 배분시 참고가 필요하여 금회에 추가 수록 반영 하였으며, 2035년 목표우수율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구 분		수도정비 기본계획 2021.3(A)	부분변경 2025.5(B)	증감 (B-A)	비 고
계획 인구(인)		264,911	264,911	-	
급수보급률(%)		94.5	94.5	-	
계획 급수인구(인)		250,225	250,225	-	
우수율(%)		85.0	85.0	-	
일최대급수량원단위(Lpcd)		440	440	-	
용수수요량 (m ³ /일) 〈일최대〉	생활용수	110,092	110,092	-	
	공업용수	17,685	17,685	-	
	기타용수	815	815	-	
	계	128,592	128,592	-	

4. 기본계획 변경수립(부분변경)

4.1 탐동정수장의 예비능력을 개선하여 건천정수장과 통합 계획

탐동정수장 ⇔ 건천정수장 비상공급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노후된 탐동정수장을

개선(Q=30,000m³/일 ⇒ Q=33,500m³/일)하고 수원 및 수질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탐동 ~ 건천 정수장의 통합 운영 방안을 계획.

탐동-건천 급수구역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계 관로를 활용한 공급방안을 수립.

구 분		통합운영방안 시설	비 고
시설개요	탐동정수장 ~건천정수장통합	· 탐동정수장 시설개선 (Q=30,000m ³ /일 ⇒ Q=33,500m ³ /일)	계획년도 2025년(2단계)
	탐동정수장 ~건천정수장 비상연계관로	· 신설가압장(Q=3,500m ³ /일, H=47m) : 1개소 · 비상연계시설 관로 : D=300~400mm, L=13.9km (1구간(D400)=6.2km, 2구간(D300)=7.7km)	계획년도 2025년(2단계)

4.2 보문 보조취수장 ⇒ 탐동, 보문정수장 비상급수계획으로 원수확보

갈수기시 상습 가뭄해소를 위한 탐동, 보문정수장의 비상공급망을 구축하여 원수확보

구 분		통합운영방안 시설	비 고
시설개요	보문보조취수장 ~ 보문정수장	· 2단 가압방식 계획(20,000m ³ /일) - 보문 보조취수시설 : 양정 170m → 120m로 조정 - 중간 가압장 신설 : 양정 75m 계획	계획년도 2025년
	보문보조취수장 ~탐동정수장	· 원수비상공급관로 신설(총 연장 6.4km) - 기존 송수 → 원수비상공급관로 전환 : 2.9km - 원수비상공급관로 신설 : 3.5km	

4.3 충효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송수관 시설개선

충효지구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송수관로 통수능 부족 및 수압부족에 따른 시설개선 계획

구 분	제1안	제2안
개 요	· 송수가압장(Q=30,000m ³ /일) 신설 후 황성대교 삼거리부근에서 형산강을 횡단 후 시도에 송수관로 D800mm, L=2,500m를 신설, 탑동분기점에서 송수관 D500mm, L=2,700m를 충효가압장 인입부까지 매설	· 송수가압장(Q=30,000m ³ /일) 신설 후 기존 형산강 고수부지에 송수관로 D800mm, L=2,240m를 매설, 탑동분기점에서 송수관 D500mm, L=3,040m를 충효가압장 인입부까지 매설
장 점	· 비시가지 도로에 매설하여 시공성에서 유리	· 기존 고수부지내에 매설함으로써 상수관로 유지관리에 유리함
단 점	· 기존관과 신설관이 별도 분리되어 유지 관리에서 불리함.	· 하천 고수부지내 매설로 주변 조경 및 시설의 부대비용 및 가시설 비용 증대
공사비	· 13,988백만원	· 14,307백만원
검토의견	· 관로 횡단후 도로부에 매설함으로써 송수관로의 시설 유지관리 및 시공성이 용이한 1안이 유리	
선 정	●	

4.4 급수구역별 유수율 개선 현안

당초 경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1.3)의 2020년 목표유수율 65.0%와 2020년의 실 유수율은 57.1%로 계획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기준 75%로 계획되어 실질적인 가능 목표율 검토가 필요.

경주시는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2023년 ~ 2032년(10년간) 사업비 522억원을 투자하여 3등급 이상 노후 배수관로 L=140km 교체를 계획하고,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는 2023년 ~ 2027년(5년간) 101.7억원(연간 20.3억원 투자)을 투자하여 현대화 사업구간외 지역을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나 경주시 재정여건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단계별, 급수구역별 유수율은 아래와 같이 검토.

주요 계획지표 비교

구 분		수도정비 기본계획(2021.3)				경주 현안 반영(부분변경)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 표 년 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급수현황 및 행정구역 면적		급수현황 및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정비 기본계획(2021.03)과 동일							
인구 (인)	계획인구	258,756	264,759	267,283	264,911	258,756	264,759	267,283	264,911
	보급률(%)	89.7	92.0	93.8	94.5	89.7	92.0	93.8	94.5
	급수인구	232,120	243,637	250,775	250,225	232,120	243,637	250,775	250,225
사용량원단위(Lpcd)		282	288	294	299	282	288	294	299
목표유수율(%)		65.0	75.0	80.0	85.0	57.1	68.5	80.0	85.0
계획 일최대 수요량 (m ³ /일)	경주시	129,990	126,466	133,270	128,592	147,874	139,600	135,002	130,335
	생활용수	125,576	116,946	115,370	110,092	143,460	128,165	115,370	110,092
	공업용수	4,414	8,567	17,049	17,685	4,414	8,609	17,120	17,827
	기타용수	-	953	851	815	-	2,826	2,512	2,416

급수구역별 단계별 용수 과부족량 산정

(일최대, 단위 : m³/일)

구 분		시설 용량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당초	현안	당초	현안	당초	현안	당초	현안
계	용수 요량	159,700	129,990	147,874	126,466	137,685	133,270	133,270	128,592	128,592
	과부 족량		29,710	11,826	33,234	22,015	26,430	26,430	31,108	31,108
광역	용수 요량	60,200	52,862	50,321	54,458	57,106	57,499	57,499	56,212	56,212
	과부 족량		7,338	9,879	5,742	3,094	2,701	2,701	3,988	3,988
국가 수도 반영	용수 요량	48,200	52,862	50,321	54,458	57,106	57,499	57,499	56,212	56,212
	과부 족량		7,338	9,879	-6,258	-8,906	-9,299	-9,299	-8,012	-8,012
안강	용수 요량	8,000	5,228	6,790	4,693	5,075	4,438	4,438	4,222	4,222
	과부 족량		2,772	1,210	3,307	2,925	3,562	3,562	3,778	3,778
보문	용수 요량	35,000	33,127	33,387	28,774	32,785	30,809	30,809	29,521	29,521
	과부 족량		1,873	1,613	6,226	2,215	4,191	4,191	5,479	5,479
불국	용수 요량	15,000	13,500	12,188	11,998	12,065	11,710	11,710	11,083	11,083
	과부 족량		1,500	2,812	3,002	2,935	3,290	3,290	3,917	3,917
탑동	용수 요량	30,000	19,833	38,788	18,126	21,906	18,689	18,689	17,940	17,940
	과부 족량		10,167	-8,788	11,874	8,094	11,311	11,311	12,060	12,060
건천	용수 요량	3,500	2,627	2,742	2,277	2,448	2,076	2,076	1,892	1,892
	과부 족량		873	758	1,223	1,052	1,424	1,424	1,608	1,608
감포	용수 요량	8,000	2,812	3,657	6,140	6,300	8,049	8,049	7,723	7,723
	과부 족량		5,188	4,343	1,860	1,700	-49	-49	277	277

국가수도기본계획(2022.10)에 따라 2025년(2단계)에 48,200m³/일로 배분량 조정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의 과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광역배분량 조정은 탐동정수장의 개량과 탐동급수구역 현대화사업에 따른 유수율 85% 달성시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 배분량 조정이 이루어 져야만 경주시 용수공급에 있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라 경주시 장래 계획 유수율은 2018년 57.9%에서 단계별 증가가 아닌 2025년 82.8%로 24.9% 증가하여 진행중인 유수율 개선사업 미달성시 용수 수요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광역배분량 조정은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경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다.

급수구역별 유수율 개선 현안의 검토 내용은 현시점의 여건을 감안한 내용이나 부분변경 본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며, 추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각 정수계통별 수요량을 상세하게 산정하여 공급계획을 조정반영 할 수 있도록 수록할 계획임.

5.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및 소요사업비(부분변경 추가사업)

구 분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합계	2020 (1단계)	2025 (2단계)	2030 (3단계)	2035 (4단계)
1. 시설확충	소 계	16,471	-	16,471	-	-
1) 급수구역 확장	○ 보문급수분구 - 배수지 신설 V=3,800m ³ - 송수관로 신설 : D800mm, L=2.5km, D500mm, L=2.7km - 송수 가압장 : 1개소	16,471	-	16,471	-	-
2. 시설개량	소 계	49,822	-	49,822	-	-
1) 시설개량	○ 탐동·건천정수장 통합개선 - 토목,기계,전기,계측제어분야 1식	45,494	-	45,494	-	-
	○ 건천취·정수장 - 토목,기계,전기,계측제어분야 1식	4,328	-	4,328	-	-
3. 안정화계획	소 계	26,366	-	23,366	-	-
1) 생상시설 안정화	○ 탐동·보문보조취수원 개발 보문 보조(취)~탐동(정) 도수관로 D500 L=3.5km - 보문 보조(취)~보문(정) 중간가압장 Q=20,000m ³ /일	11,489	-	11,489	-	-
2) 비상연계	○ 탐동~건천정수장비상연계 - 탐동(정)~건천(정) 비상연계관로 D300~400 L=13.9km, 송수가압장 1개소 (탐동·건천 통합 후, 송수관로로 활용 예정) 충효(배) 배수관로~탐동(정) 송수관로 고천대교분기점 TIE밸브실 및 밸브설치 1식	14,877	-	14,877	-	-

6. 재정계획

소요사업비 483,300억원으로 당초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97,440억원 증가 투자하는것으로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385,860	483,300 (증97,440)	137,915	163,540	261,168 (증97,628)	39,060	38,871 (감189)	45,346
시설확충	134,007	156,039 (증22,032)	13,336	113,673	135,705 (증22,032)	6,998	6,998	-
시설개량	190,803	239,844 (증49,041)	124,579	41,087	90,317 (증49,230)	25,137	24,948 (감189)	-
안정화	61,051	87,417 (증26,366)	-	8,780	35,146 (증26,366)	6,925	6,925	45,346

7. 기 타

경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세부내용과 관계도서는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 고시 제2025-153호

구미 도시관리계획(옥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5-14호(2005.1.13.)로 결정 고시되고 구미시 고시 제2016-45호(2016.2.25.)로 결정(변경) 고시한 옥계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구미 도시관리계획(옥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옥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5	구미 옥계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구미시 옥계동 일원	283,645.8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구역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m ²)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83,645.8	-	283,645.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99,473.0	-	99,473.0	35.1	
제2종일반주거지역	130,682.0	-	130,682.0	46.1	
자연녹지지역	53,490.8	-	53,490.8	18.8	

※ 기정은 최종실시계획 승인(경상북도고시 제1994-130호, 1994. 12. 31)후, 구미 도시계획 재정비(경상북도고시 제2004-76호, 2004. 4. 8)상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등 변경고시된 용도지역 면적임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변 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283,645.8	100.0	-	283,645.8	100.0
주거 용지	소계	162,173.2	57.1	증) 585.3	162,758.5	57.4
	단독주택용지	34,388.7	12.1	-	34,388.7	12.1
	공동주택용지	117,444.5	41.4	-	117,444.5	41.4
	근린생활시설용지	10,340.0	3.6	증) 585.3	10,925.3	3.9
공공 용지	소계	121,472.6	42.9	감) 585.3	120,887.3	42.6
	도로	44,767.7	15.8	-	44,767.7	15.8
	학교	12,627.8	4.5	-	12,627.8	4.5
	공원	10,474.2	3.7	-	10,474.2	3.7
	녹지	38,324.6	13.5	-	38,324.6	13.5
	유치원	600.0	0.2	-	600.0	0.2
	주차장	815.5	0.3	-	815.5	0.3
	수도시설	11,962.3	4.2	-	11,962.3	4.2
	공공청사	1,600.4	0.6	감) 585.3	1,015.1	0.3
	사회복지시설	300.1	0.1	-	300.1	0.1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기정	합 계	28	3,748	4	1,374	12	2,035	12	339
기정	중 로	1	800	1	800	-	-	-	-
기정	소 로	27	2,948	3	574	12	2,035	12	339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0	20	보조간선 도로	1,338 (800)	대로 3-14	거의 산66-3	일반 도로	-	()는 지구내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78	중로 1-30	소로 3-10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290	중로 1-30	소로 1-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206	중로 1-30	소로 2-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64	소로 1-1	소로 2-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81	소로 1-1	소로 2-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532	중로 1-30	소로 2-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72	소로 2-3	소로 2-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71	소로 2-3	소로 2-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75	소로 1-2	소로 1-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34	소로 1-3	소로 2-6	일반 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542	소로 1-3	소로 1-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71	소로 1-3	소로 2-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86	소로 2-8	소로 2-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78	소로 1-3	소로 2-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817 (29)	중로 2-3	소로 2-8	일반 도로	-	()는 지구내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6	대로 3-14	소로 2-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0	대로 3-14	소로 2-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7	대로 3-14	소로 2-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34	중로 1-30	소로 2-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32	중로 1-30	소로 2-8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7	대로 3-14	소로 2-8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0	대로 3-14	소로 2-8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9	대로 3-14	소로 2-8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9	4	국지도로	32	소로 2-3	소로 2-5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0	4	국지도로	33	소로 1-1	지구계 산25임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41	소로 1-2	지구계 산45-1임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98	중로 1-30	지구계 산42임	보행자 전용도로	-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	노외 주차장	옥계동 544-1번지 일원	815.5	-	815.5	경북고 제298호 (91.8.12.)	

3)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3	옥계1	어린이 공 원	옥계동 45-1 일원	6,893.6	-	6,893.6	경북고 제298호 (91.8.12.)	
기정	44	옥계2	어린이 공 원	옥계동 540 일원	3,580.6	-	3,580.6	경북고 제298호 (91.8.12.)	

4)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1	녹지	완충 녹지	옥계동 433 일원	5,140.6	-	5,140.6	경북고 제298호 (91.8.12.)	
기정	25	녹지	경관 녹지	옥계동 산45-3 일원	5,008.7	-	5,008.7	경북고 제298호 (91.8.12.)	
기정	26	녹지	경관 녹지	옥계동 산27 일원	28,175.3	-	28,175.3	경북고 제298호 (91.8.12.)	

5)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9	상수도	옥계동 산45-2 일원	10,441.7	-	10,441.7	경북고제1992-244호(92.8.7.)	
기정	20	가압장	옥계동 573 일원	1,520.6	-	1,520.6	구미고제2016-45호(16.2.25.)	

6)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공공청사	옥계동 556-2 일원	1,600.4	감)585.3	1,015.1	경북고 제298호 (91.8.12.)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변경 - A=1,600.4㎡ → 1,015.1㎡ 감) 58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계지구내 미사용중인 공공청사(우체국)를 주민공동이용습터로 리모델링하고자 공공청사(우체국)부지 일부를 제척함

7)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4	양포초교	초등학교	옥계동 551 일원	12,627.8	-	12,627.8	경북고 제298호 (91.8.12.)	
기정	7	옥계 유치원	유치원	옥계동 548-3 일원	600.0	-	600.0	경북고 제298호 (91.8.12.)	

8)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의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노 인 정	옥계동 산25 일원	300.1	-	300.1	경북고 제298호 (91.8.12.)	

3.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계	25개가구	190,079.3	229개 획지	190,079.3	
기정	공1	1	49,276.0	옥계동 539 일원	49,276.0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공2	2	44,821.6	옥계동 542 일원	44,821.6	
기정	공3	3	23,346.9	옥계동 545 일원	23,346.9	
기정	노1	4-①	300.1	옥계동 548-2 일원	300.1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유1	4-②	600.0	옥계동 548-3 일원	600.0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단1	6	2,665.0	옥계동 550 일원	2,665.0	■ 2개필지 합필가능(660㎡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단2	7	2,248.7	옥계동 549 일원	2,248.7	■ 2개필지 합필가능(660㎡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단3	8	2,482.3	옥계동 552 일원	2,482.3	■ 2개필지 합필가능(660㎡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단4	9	1,519.4	옥계동 553 일원	1,519.4	■ 2개필지 합필가능(660㎡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기정	단5	10-①~ ⑩	1,709.1	옥계동 554 일원	1,7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필지 합필가능(660m²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공청1	10-⑪	585.3	옥계동 554-5 일원	58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변경	근5		585.3	옥계동 554-5 일원	58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주1	11	815.5	옥계동 553-6 일원	8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공청2	12-⑤	1,015.1	옥계동 556-2 일원	1,0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근1	12-①~ ④,⑥	1,478.6	옥계동 556 일원	1,47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 2개필지 합필가능
기정	근2	13	2,656.9	옥계동 555 일원	2,65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 2개필지 합필가능
기정	근3	14	2,322.1	옥계동 559 일원	2,3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 2개필지 합필가능
기정	근4	15	3,882.4	옥계동 560 일원	3,8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 2개필지 합필가능
기정	단6	16	2,430.9	옥계동 564-1 일원	2,4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필지 합필가능(660m²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단7	17	2,689.1	옥계동 563-1 일원	2,68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필지 합필가능(660m²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단8	18	2,719.0	옥계동 562-1 일원	2,7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필지 합필가능(660m²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단9	19	5,034.3	옥계동 561 일원	5,03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필지 합필가능(660m²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단10	20	3,458.5	옥계동 565-1 일원	3,45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필지 합필가능(660m²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단11	21	2,939.7	옥계동 566-1 일원	2,9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필지 합필가능(660㎡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단12	22	2,155.5	옥계동 567 일원	2,1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필지 합필가능(660㎡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단13	23	2,337.2	옥계동 568 일원	2,3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필지 합필가능(660㎡이하)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학1	25	12,627.8	옥계동 570 일원	12,62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수1	26	10,441.7	옥계동 572 일원	10,4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획지이하 분할금지
기정	수2	27	1,520.6	옥계동 573 일원	1,5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획지이하분할금지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1 ~공3	1, 2, 3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2)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단1~ 단13	6, 7, 8, 9, 10-①~⑩, 16, 17, 18, 19, 20, 21, 22, 23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노유자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5분의2범위내에서 허용(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1층에 한하여 연면적 2분의1범위내에서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허용용도	불허용도
근1~ 근4	근1~ 근5	12-①~④,⑥, 13, 14, 15	10-⑩, 12-①~④,⑥, 13, 14, 15	용도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4)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노인정 및 그 부대시설
노1	4-①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유1	4-②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청1~ 공청2	공청2	10-① 12-⑤	12-⑤	용도	허용용도	· 공공청사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주1		11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학1	25	용도	허용용도	· 학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수1~ 수2	26 ~ 27	용도	허용용도	· 수도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

도면번호	위 치 (가구및획지)	계 획 내 용	비 고
-	전지역	· 구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름	

2)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허용구간

도면번호	위 치 (가구및획지)	계 획 내 용	비 고
공1~공3	1, 2, 3	· 중로1-30호선 일부구간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소로1-1호선 일부구간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3)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인센티브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시행령 46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규정 적용

II.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 총론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구미 옥계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구성)

① 본 지침은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총칙과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통 적용되며, 제2장은 건축부문, 제3장은 공공부문에 각각 적용한다.

1. 건축부문 시행지침의 적용은 구미 옥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공부문 시행지침의 적용은 도시계획 시설을 포함하여 도로 시설물, 공원, 녹지, 옥외 가로시설물등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는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비롯한 제반 관련법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구미시 건축조례 등에 따른다.
- ②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③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④ 개별건축물의 심의(건축, 교통)결과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없이

반영가능하며, 공공기능을 갖는 시설(도로, 공원·녹지 등)이 대지내로 편입될 경우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공공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지중 매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가구”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획지를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가구번호에 의해 설정한 가구단위를 말한다.
3. “획지”라 함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개발단위를 말한다.
4. “허용용도”라 함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 중 당해 지역에 허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한다.
5.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허용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6. “권장용도”라 함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방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구의 특성을 부여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유도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7. “지정용도”라 함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정하여 정한 특정한 용도를 말한다.
8.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9.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10.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1.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2.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이때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공지는 보행 공간 등으로 공공에 항시 제공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시설물(휴게시설 등) 이외의 보행 등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지정에 의해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서 씹지형 공지 또는 공개공지, 보차 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등 다른 유형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대지 안의 공지를 말한다.

14.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구미시건축조례 제30조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지를 말한다.
 15.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 할 수 있도록 대지 안 또는 건축물 안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16.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17.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18.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일반도로 중 보행량이 빈번하여 차량통행을 불허한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만을 허용하는 일반도로를 말한다.
 1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에서 정의된 용어를 말한다.
 20. “투시형 셔터”라 함은 전체의 2분의 1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구미 옥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건축 및 공공시설의 조성행위에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제6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

① 지구단위구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 3 장 가 구 및 획 지 에 관 한 사 항

제8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필지)는 2이상의 독립된 획지로 분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독주택용지는 2개 획지(필지)에 한해 합병을 허용하되, 최대규모는 660㎡이하로 제한한다.

③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며, 적정규모의 다양한 시설 입지

유도를 위해 2개 획지(필지)에 한해 합병을 허용한다.

④ 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는 각 용지별 특수성 및 단일성을 감안하여 필지합병을 제한한다.

제 4 장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건축물 용도)

① 각 획지별 건축물 용도계획은 아래표와 같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일지라도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불허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구 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노유자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근생시설은 건축연면적의 5분의2범위내에서 허용(2층 이하시 1층에 한하여 연면적 2분의1 범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공동주택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근린생활 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기타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 : 노인정 및 그 부대시설 • 유 : 유치원 및 그 부대시설 • 공청 : 공공청사 및 그 부대시설 • 주 :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 학 : 학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수 : 수도시설 및 그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제10조 (건폐율에 관한 사항)

① 계획구역내 적용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단독주택 용지	공동주택 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노인정	유치원	공공청사	주차장	학교	수도시설
건폐율	60%	60%	60%	60%					20%

② 도면표시

건폐율	

제11조 (용적률에 관한 사항)

① 계획구역내 적용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단독주택 용지	공동주택 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노인정	유치원	공공청사	주차장	학교	수도시설
용적률	200%	250%	200%	200%					100%

② 도면표시

용적률	

제12조 (높이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최대 층수가 제한되어있는 획지는 지정된 층수(지상층을 말함)이하

로 건축하여야 한다.

구 분	단독주택 용지	공동주택 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노인정	유치원	공공청사	주차장	학교	수도시설
최고 층수	4층이하	-	4층이하	4층이하					

② 도면표시

	최고층수

제13조 (건축물의 배치)

① 단독주택용지

1.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배치는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향 또는 동남향, 남서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부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한다.

② 공동주택용지

1.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배치는 가로망 계획에 순응하며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부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한다.
2. 모든 아파트를 획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획지내 모든 아파트 주동의 전면길이를 합한 총길이의 10%이상을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배치를 권장한다.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1.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한다.
2.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토록 권장한다.

제14조 (건축물의 형태)

① 단독주택용지

1.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지붕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건축물과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3. 경사지붕의 구배는 1:1~1:1.3 경사로 설치토록 권장한다.
4. 담장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설치시 가능한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를 사용하여 그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한다.
5. 건축물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건축물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공동주택용지

1. 부대복리시설의 지붕 형태는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경사지붕, 옥상 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토록 권장한다.
2. 아파트의 외벽은 입지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

고층부로 변화 있는 입면계획을 도모하여 특색 있는 단지조성을 유도토록 권장한다.

3.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토록 권장한다.
4.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로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설치토록 권장한다.
5. 부대복리시설은 담장 설치를 제한한다. 단, 부득이하게 설치하여야 할 경우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 투시형 담장으로 1.5m이하로 설치토록 권장한다.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1.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2.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폭원 1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15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의 색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경관계획 편에서 제시된 색채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외벽의 색깔은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지의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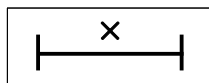
제16조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

- ①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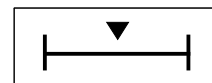
제17조 (차량의 진·출입)

- ①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차량의 출입구는 도로교차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③ 차량출입구는 획지(필지) 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단,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어 있는 대지의 차량 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허용구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토지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기타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 ⑥ 차량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 내에서 차량 출입구의 위치는 개별획지의 건축허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평가 등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 ⑦ 도면표시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허용구간



제18조 (주차시설)

① 구역내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에 따른다.

3.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 6 장 도로

제19조 (적용범위)

① 대상지내 시설 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0조 (포장원칙)

-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 (차도포장)

- ①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보도포장)

- ① 보도 포장재의 형태 및 규격은 가로 전체의 통일성과 주변시설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통일감 있게 조성한다.
- ②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용 점자 블록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한다.

제23조 (보행자전용도로)

- ① 보행자전용도로는 신체장애자, 노약자 등의 불편이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②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어린이공원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주변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되도록 한다.
- ③ 보행자전용도로의 주 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를 배치하도록 한다.
- ④ 보행자전용도로 내부에는 수목식재 및 휴게·편익시설 설치 등 보행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⑤ 보행자전용도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투수성 포장을 하도록 한다.
- ⑥ 공동주택용지와 접한 보행자전용도로에는 1개 지점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단지내부의 보행자통로와 연결하도록 한다.

제 7 장 주차장

제24조 (주차장 조성기준)

- ① 주차장의 조성방법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조성한다.

제25조 (차량의 진·출입)

- ① 차량의 출입구는 도로교차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 8 장 가로장치물에 관한 사항

제26조 (차량 및 보행안내시설)

- ① 차량안내시설인 교통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등에 의거 설치하되,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 설치함으로써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 ② 보행안내시설 중 지도의 수록이 요구되는 도시안내시설과 공원안내시설, 그리고 방향안내시설과 버스노선 및 정류장 안내시설, 게시판 등은 동일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시설되어야 한다.
- ③ 보행안내시설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의 사용에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수록정보의 위계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의 배치)

- ①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은 일괄적으로 계획·설계하여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보행안내시설을 포함한 가로장치물을 가로변에 배치할 경우 녹지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보도와 인접한 녹지내부에 배치토록 하여 보행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제 9 장 공원 및 녹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28조 (어린이공원 조성원칙)

- ①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을 고려하여 주제공간의 성격에 부합되고 계절의 변화를 발현할 수 있으며 주변 수림과 조화를 이루는 향토적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는 수종선택과 배식계획을 도입하도록 한다.
- ② 어린이공원내 시설은 단순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 및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여 교육과 휴게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 ③ 공간의 특성, 규모에 따른 적정시설의 배치로 인한 행위보조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을 도입하도록 한다.
- ④ 공원 전지역에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는 조경시설물을 배치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소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 ⑤ 자동차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화단웬스를 설치하고 시설별 용도 및 보행기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포장재료 및 포장패턴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⑥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이며 공간의 기능 및 시설의 성격에 따라 장소별 특징을 강조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녹지 조성원칙)

- ①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② 녹지 중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안전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녹지의 경계는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분되어지게 하여야 한다.

- ③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란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란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 ④ 지역간 연결도로변 완충녹지는 정상부 1.5m이상의 둔덕을 조성하고 수목을 활용하여 소음·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⑤ 완충녹지의 미관 증대와 기능의 능률성을 위해 마운딩을 조성하도록 한다.

3.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 (계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전략산업과(054-480-61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문경시 고시 제2025-94호

문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2-62호(2022.4.18.)로 고시한 문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항 중 일부 오기 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문 경 시 장

〈모전2구역〉

■ 당초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기반시설용지	56,304.2	증)19,070	56,304.2	40.2	
도로	45,528.9	증) 651	46,179.9	24.7	
주차장	1,375.0	-	1,375.0	0.7	주차장 2개소
공원	4,233.0	-	4,233.0	2.3	어린이공원 2개소
경관녹지	4,580.3	-	4,580.3	2.4	
전기공급설비	587.0	-	587.0	0.3	송전시설 1개소
종합의료시설	-	증)18,419	18,419	9.8	종합의료시설1개소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기반시설용지	56,304.2	증)19,070	75,374.2	40.2	
도로	45,528.9	증) 651	46,179.9	24.7	
주차장	1,375.0	-	1,375.0	0.7	주차장 2개소
공원	4,233.0	-	4,233.0	2.3	어린이공원 2개소
경관녹지	4,580.3	-	4,580.3	2.4	
전기공급설비	587.0	-	587.0	0.3	송전시설 1개소
종합의료시설	-	증)18,419	18,419	9.8	종합의료시설1개소

〈모전1, 2지구〉

■ 당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5,430.0	-	155,430.0	100.0	
주 거 용 지	103,909.0	-	103,909.0	66.8	
단독주택용지	49,020.1	-	49,020.1	31.5	
근린생활용지	9,950.0	-	9,950.0	6.4	
공동주택용지	44,938.9	-	44,938.9	28.9	
도시기반시설용지	51,521.0	-	51,521.0	33.2	
도 로	46,948.1	-	46,948.1	30.2	
주차장	725.0	-	725.0	0.5	
보행자도로	433.0	-	433.0	0.3	
어린이공원	3,414.9	-	3,414.9	2.2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획지면적(㎡)		
				최소	최대	
계	20개가구	49,020.1	-	-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공통사항 - 획지방법 : 최대 면적이하로 합병 및 공동개발허용 - 최소면적이상 및 최대면적이하로 확장하기 위한 분할·합병·공동개발허용
A11	A11	2,980.1	-1	213.5	2,980.1	
			-2	219.2		
			-3	461.6		
			-4	236.1		
			-5	239.5		
			-6	243.0		
			-7	240.2		
			-8	233.6		
			-9	242.8		
			-10	239.3		
			-11	235.9		
			-12	232.4		
			-13	228.8		
A12	A12	3,137.6	-1	208.0	3,137.6	
			-2	207.8		
			-3	214.2		
			-4	214.1		
			-5	214.2		
			-6	214.1		
			-7	214.1		
			-8	207.7		
			-9	207.7		
			-10	213.9		
			-11	214.0		
			-12	214.2		
			-13	214.2		
			-14	214.1		

(4) 기타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3개가구	4,139.9	-	4,139.9	
D1	D1	1,656.9	D1	1,656.9	어린이공원
D2	D2	1,758.0	D2	1,758.0	어린이공원
D4	D4	725.0	D4	128.1	주차장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
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분	계획내용	
A1 ~ A21	A1-1 ~ A21-1	용도	허용 용도	· 단독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단,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변경	· 단독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단,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 노유자시설(경로당만 해당) →단, A20-1획지에 한함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규정 적용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3층이하	
		배치	· 남향, 남동·남서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현재 조성된 도로계획고에서 ±0.3m범위에서 부지계획고를 설정토록 권장	
		형태	· 지붕은 경사 및 곡선형 지붕을 권장하며, 평지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토록 권장 ·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 패널 외장은 지양을 권장 · 폭원 1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색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허가(심의)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권장	

(라)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획지)	구분		계획내용	
D1, D2, D4	D1, D2, D4	용도	지정용도	D1	어린이공원
				D2	어린이공원
				D4	공공공지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이하	
		용적률		-	
		높이		3층이하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55,430.0	-	155,430.0	100.0	
주거용지	104,029.8	-	104,029.8	66.8	
단독주택용지	49,140.6	-	49,140.6	31.5	
근린생활용지	9,950.3	-	9,950.3	6.4	
공동주택용지	44,938.9	-	44,938.9	28.9	
도시기반시설용지	51,400.2	-	51,400.2	33.2	
도로	46,827.3	-	46,827.3	30.2	
주차장	725.0	-	725.0	0.5	
보행자도로	433.0	-	433.0	0.3	
어린이공원	3,414.9	-	3,414.9	2.2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획지면적(㎡)		
				최소	최대	
계	20개가구	49,140.6	-	-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공통사항 - 획지방법 : 최대 면적이하로 합병 및 공동개발허용 - 최소면적이상 및 최대면적이하로 확장하기 위한 분할·합병·공동개발허용
A11	A11	3,265.9	-1	213.5	3,265.9	
			-2	219.2		
			-3	461.6		
			-4	236.1		
			-5	239.5		
			-6	243.0		
			-7	240.2		
			-8	233.6		
			-9	242.8		
			-10	239.3		
			-11	235.9		
			-12	232.4		
			-13	228.8		
A12	A12	2,972.3	-1	208.0	2,972.3	
			-2	207.8		
			-3	214.2		
			-4	214.1		
			-5	214.2		
			-6	214.1		
			-7	214.1		
			-8	207.7		
			-9	207.7		
			-10	213.9		
			-11	214.0		
			-12	214.2		
			-13	214.2		
			-14	214.1		

(4) 도시기반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3개가구	4,139.9	-	4,139.9	
D1	D1	1,656.9	D1	1,656.9	어린이공원
D2	D2	1,758.0	D2	1,758.0	어린이공원
D4	D4	725.0	D4	725.0	주차장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분	계획내용		
A1 ~ A20	A1-1 ~ A20-10	용 도	허용 용도	기정	· 단독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단,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변경	· 단독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단,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 노유자시설(경로당만 해당) →단, A20-1획지에 한함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규정 적용
				용적률	· 180%이하
				높이	· 3층이하
				배치	· 남향, 남동·남서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현재 조성된 도로계획고에서 ±0.3m범위에서 부지계획고를 설정토록 권장
				형태	· 지붕은 경사 및 곡선형 지붕을 권장하며, 평지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토록 권장 ·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 판넬 외장은 지양을 권장 · 폭원 1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색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허가(심의)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권장

(라) 도시기반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획지)	구분		계획내용			
D1, D2, D4	D1, D2, D4	용도	지정용도	D1	어린이공원		
				D2	어린이공원		
				D4	주차장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5%이하		
					-		
					3층이하		

<의곡지구>

■ 당초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표시번호	구분	획 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공 공 시 설 용 지			35,220	감)1,673	33,547	
D-1	영순면사무소	영순면 의곡리 22-3번지 일원	2,010	-	2,010	
D-2	도로	영순면 의곡리 101-2번지 일원	27,002	-	27,002	
D-3	게이트볼장	영순면 의곡리 42-3번지 일원	802	-	802	
D-4	광장	영순면 의곡리 38-1번지 일원	5,718	감)1,673	4,045	

■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표시번호	구분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공 공 시 설 용 지			35,220	감)1,673	33,547	
D-1	영순면사무소	영순면 의곡리 22-3번지 일원	2,010	-	2,010	
D-2	도로	영순면 의곡리 101-2번지 일원	26,690	-	26,690	
D-3	게이트볼장	영순면 의곡리 42-3번지 일원	802	-	802	
D-4	광장	영순면 의곡리 38-1번지 일원	5,718	감)1,673	4,045	

<불암지구>

■ 당초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위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53,000	-	153,000	100.0	
주 거 용 지	산양면 불암리	75,704	-	75,704	49.5	
상 업 용 지	산양면 불암리	10,309	-	10,309	6.8	
공 업 용 지	산양면 불암리	8,910	-	8,910	5.8	
녹 지 용 지	산양면 불암리	3,261	-	3,261	2.1	
공공시설용지	산양면 불암리	54,816	-	54,816	35.8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5) 공공시설용지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6	산양면불암리	불허용도	도 로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위 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53,000	-	153,000	100.0	
주 거 용 지	산양면 불암리	77,124	-	77,124	50.4	
상 업 용 지	산양면 불암리	9,667	-	9,667	6.3	
공 업 용 지	산양면 불암리	8,910	-	8,910	5.8	
녹 지 용 지	산양면 불암리	3,261	-	3,261	2.1	
공공시설용지	산양면 불암리	54,038	-	54,038	35.3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5) 공공시설용지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6	산양면불암리	지정용도	도 로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노은지구〉

■ 당초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표시번호	구분	획 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91,911	-	91,911	
공 공 시 설 용 지		-	28,022	증)188	28,210	
D-1	동로초등학교	동로면 노은리 155-2번지 일원	12,929	-	12,929	
D-2	우 체 국	동로면 노은리 166번지 일원	900	-	900	
D-3	농 협	동로면 노은리 184-4번지 일원	540	-	540	
D-4	농 협 창 고	동로면 노은리 184-7번지 일원	1,115	-	1,115	
D-5	농 협 창 고	동로면 노은리 184-5번지 일원	1,485	-	1,485	
D-6	도 로	동로면 노은리 188-27번지 일원	11,503	증)188	11,691	

■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표시번호	구분	획 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71,911	-	71,911	
공 공 시 설 용 지		-	28,022	증)188	28,210	
D-1	동로초등학교	동로면 노은리 155-2번지 일원	12,929	-	12,929	
D-2	우 체 국	동로면 노은리 166번지 일원	900	-	900	
D-3	농 협	동로면 노은리 184-4번지 일원	540	-	540	
D-4	농 협 창 고	동로면 노은리 184-7번지 일원	1,115	-	1,115	
D-5	농 협 창 고	동로면 노은리 184-5번지 일원	1,485	-	1,485	
D-6	도 로	동로면 노은리 188-27번지 일원	11,053	증)188	11,24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서 : 별첨(계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시 군

공 고

안동시 공고 제2025-1277호

안동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성곡동 241번지 일원 안동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서류의 열람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안 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2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 사업의 명칭 :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

3.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사업면적 및 편입토지 변경
- 건축계획 및 공사계획 변경

4. 사업의 규모 (변경있음)

- 시설결정 면적 : 1,842,181.2㎡
- 사업시행 면적 : (기정) 35,773.0㎡
(변경) 37,422.9㎡
- 공사현황
(기정)
 - 가. 건축공 : 4개동, 지상2층 (건축면적 : 2,443.59㎡, 연면적 : 2,922.76㎡)
 - 나. 토 공 : 절토 16,717.7㎡, 성토 17,577.8㎡,
법면보호공(줄떼식재) 3,501.54㎡, (평떼식재) 294.37㎡
 - 다. 우수공 : 우수맨홀(D900) 18EA, (D1,200) 4EA, 집수정(600x600) 12EA,
우수관(D300) 443.0m, (D400) 207.5m, (D500) 193.5m, (D700) 76.0m,
U형측구(300x300) 18.1m, 측구수로관(300x300) 442.0m,
빗물받이(300x400x900) 59EA, 연결관(D200) 466.0m,
분기관(D200) 40.0m, 배수관날개벽(D800) 1EA
 - 라. 오수공 : 오수맨홀(D900) 10EA, (D1,500) 1EA, 오수관(D200) 364.5m,
압송관(D80) 189.0m
 - 마. 포장공 : 아스콘포장(T=150mm) 6,110.9㎡, L형측구(180x200) 930.0m,
보차도낮춤석(180x100) 36.5m, 보차도경계석(180x200) 47.0m,
낮춤석(200x100) 13.5m, 인조화강블록(T=60mm) 1,256.2㎡,
도로경계석(150x150) 371.5m

(변경)

가. 건축공 : 4개동, 지상2층 (건축면적 : 2,443.59㎡, 연면적 : 2,922.76㎡)

나. 토 공 : 절토 15,561.0㎡, 성토 16,487.0㎡,
법면보호공(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740.0㎡

다. 우수공 : 우수맨홀(D900) 16EA, (D1,200) 4EA, 집수정(600x600) 3EA,
우수관(D300) 307.6m, (D400) 184.2m, (D500) 83.0m, (D700) 86.0m,
U형측구(300x300) 18.1m, 측구수로관(300x300) 64.0m,
빗물받이(300x400x900) 59EA, 연결관(D200) 502.5m,
배수관날개벽(D800) 1EA

라. 오수공 : 오수맨홀(D900) 10EA, (D1,500) 1EA, 오수관(D200) 327.5m,
압송관(D80) 115.0m

마. 포장공 : 아스콘포장(T=150mm) 6,261.8㎡, L형측구(180x200) 1,126.7m,
보차도낮춤석(180x100) 12.0m, 보차도경계석(180x200) 86.2m,
인조화강블록(T=60mm) 1,647.3㎡, 도로경계석(150x150) 412.9m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 성 명 : 안동시장

6.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2023. 4. 20.)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7. 공람장소, 기간 및 의견제출

가. 공람장소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관광인프라과, 용상동 행정복지센터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라. 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있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성명	
1	기정	안동	성곡	241	원	74,251.0	34,811.0	공	안동시			
1	변경	안동	성곡	241-4	원	34,778.0	34,778.0	공	안동시			
2	변경	안동	성곡	241-7	원	247.0	247.0	공	안동시			
3	변경	안동	성곡	241-8	원	1,409.0	1,409.0	공	안동시			
2	기정	안동	성곡	277-2	답	64.0	64.0	공	안동시			
4	변경	안동	성곡	277-2	답	64.0	64.0	공	안동시			
3	기정	안동	성곡	296	전	145.0	145.0	공	안동시			
5	변경	안동	성곡	296	전	145.0	145.0	공	안동시			
4	기정	안동	성곡	1525	공	8,922.6	51.6	공	안동시			
6	변경	안동	성곡	1525-2	공	51.7	51.7	공	안동시			
5	기정	안동	성곡	1526	도	349.8	36.8	공	안동시			
7	변경	안동	성곡	1526-1	도	36.9	36.9	공	안동시			
6	기정	안동	성곡	1527	공	47,909.5	27.6	공	안동시			
8	변경	안동	성곡	1527-8	공	27.1	27.1	공	안동시			
7	기정	안동	성곡	산152-2	임	285.0	285.0	공	안동시			
9	변경	안동	성곡	산152-2	임	285.0	285.0	공	안동시			
8	기정	안동	성곡	산153-1 1	임	488.0	352.0	공	안동시			
10	변경	안동	성곡	241-6	임	363.0	363.0	공	안동시			
합 계 (기 정)					8필지	132,414.9	35,773.0					
합 계 (변 경)					10필지	37,406.7	37,406.7					
1	변경	안동	성곡	1592	원	37,422.9	37,422.9	공	안동시			
합 계(확정측량 후)					1필지	37,422.9	37,422.9					

9.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5402),
관광인프라과(☎054-840-58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공고 제2025-1683호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

구미시 인의동 5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구 미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5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 2단지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중로3-273, 중로3-261, 소로3-442호선)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자 : 김 범 석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정빌딩)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노 선 명	위 치	규모 및 면 적	비고
중로3-273호선	인의동 452-11 ~ 인의동 113-1	L=374m,B=12-14m	
중로3-261호선	인의동 523-3 ~ 인의동 549-2	L=190m,B=13m	
소로3-442호선	인의동 130-10 ~ 인의동 84	L=308m,B=6m	
사면	인의동 129 일원	A=1,374.0㎡	구역 외

나. 금회 사업시행 면적 : 10,828.8㎡

5. 사업시행기간 : 2021. 11. 30. ~ 2025. 05. 31.

6. 공사 완료일 : 2025. 05. 20.

끝.

경산시 공고 제2025-1030호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와1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정정)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와1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사전 열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경 산 시 장

□ 정정공고 사유

경산시 공고 제2025-990호(2025.5.26)로 공고된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와1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내용 중 편입토지조서(수정분) 정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78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로
- 명 칭 : 소로3-와15호선
- ※ 박사~대한간 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규모

- 소로3-와15호선 : L=1,050m, B=6.5m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산시장
- 주 소 : 경산시 남매로 159

6. 실시계획인가 사유

- 박사~대한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개설함으로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이용자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붙임

8. 열람 및 의견청취 장소 : 경산시청 도시과, 도로철도과

9.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5. 6. 2. ~ 2025. 6. 16.(도보게재일로
부터 15일간)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810-5522) 및 도로철도과
(☎810-6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비고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와촌	박사	789 - 27	천	3,238	256	국(건설부)		
2	와촌	박사	792	도	8,820	14	국(기획재정부)		
3	와촌	박사	789 - 116	목	40	40	경산시		
4	와촌	박사	789 - 2	천	1,651	37	경산시		
5	와촌	박사	789 - 113	목	59	59	경산시		
6	와촌	박사	789 - 114	목	34	34	경산시		
7	와촌	박사	789 - 115	목	37	37	경산시		
8	와촌	신한	594 - 31	전	66	66	경산시		
9	와촌	신한	594 - 26	천	174	118	국(건설부)		
10	와촌	신한	594 - 32	목	42	42	경산시		
11	와촌	신한	594 - 33	목	4	4	경산시		
12	와촌	신한	170 - 3	전	13	13	경산시		
13	와촌	신한	604	구	4,526	448	국(농림축산식품부)		
						174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비고
	읍면	동 리	지번	지 도				성 명	주 소	
14	와촌	신한	604	- 1	도	879	80	국(기획재정부)		
15	와촌	신한	168	- 2	답	9	9	최 * 원	대구시 북구 학정로 110길	
16	와촌	신한	168	- 1	답	5	5	최 * 원	대구시 북구 학정로 110길	
17	와촌	신한	168	- 3	답	399	399	최 * 원	대구시 북구 학정로 110길	
18	와촌	신한	167	- 3	답	475	475	경산시		
19	와촌	신한	167	- 2	답	56	56	경산시		
20	와촌	신한	609		도	53	43	국(건설부)		
21	와촌	신한	81	- 7	목	63	19	경산시		
22	와촌	신한	81	- 10	목	4	4	경산시		
23	와촌	신한	90	- 4	답	312	312	경산시		
24	와촌	신한	90	3	답	67	67	경산시		
25	와촌	신한	92	- 3	과	40	40	남 * 태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6	와촌	신한	92	1	답	14	14	경산시		
27	와촌	신한	93	3	답	23	23	경산시		
28	와촌	신한	93	4	구	278	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	와촌	신한	94	5	구	5	5	정 * 문 외1명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299	
30	와촌	신한	94	3	답	6	6	경산시		

일련 번호	토지소제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 번				성 명	주 소	소	
31	와촌	신한	167	1	답	20	20	경산시			
32	와촌	신한	166	-	답	78	78	경산시			
33	와촌	신한	166	1	답	15	15	경산시			
34	와촌	신한	134	1	답	45	45	경산시			
35	와촌	신한	134	2	답	313	313	경산시			
36	와촌	신한	164	8	답	5	5	경산시			
37	와촌	신한	164	10	답	92	92	경산시			
38	와촌	신한	135	6	구	817	10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9	와촌	신한	164	-	답	76	76	경산시			
40	와촌	신한	164	-	답	26	26	경산시			
41	와촌	신한	135	-	과	23	23	경산시			
42	와촌	신한	135	-	답	8	8	경산시			
43	와촌	신한	136	-	답	112	112	경산시			
44	와촌	신한	137	-	답	219	219	경산시			
45	와촌	신한	138	-	답	73	73	경산시			
46	와촌	신한	139	-	답	234	234	경산시			
47	와촌	신한	140	-	답	217	217	경산시			

일련 번호	토지소제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비고
	읍면	동 리	지번	지번				성 명	주 소	소	
48	와촌	신한	141	-	1	282	282	경산시			
49	와촌	신한	142	-	1	203	203	경산시			
50	와촌	신한	143	-	1	358	358	경산시			
51	와촌	신한	144	-	1	416	416	경산시			
52	와촌	신한	145	-	1	262	262	경산시			
53	와촌	신한	133	-	1	29	29	경산시			
54	와촌	신한	133	-	2	323	323	경산시			
55	와촌	신한	607			1,005	790	국(건설부)			
56	와촌	신한	132	-	2	88	88	경산시			
57	와촌	신한	132	-	1	7	7	경산시			
58	와촌	신한	131	-	1	143	143	경산시			
59	와촌	신한	130		1	7	7	경산시			
60	와촌	신한	129		5	22	22	경산시			
61	와촌	신한	129		4	173	173	경산시			
62	와촌	신한	129		6	397	397	경산시			
63	와촌	신한	311		1	303	303	우 * 수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64	와촌	신한	312		2	92	92	우 * 수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비고
	읍면	동 리	지번	지번				성 명	주 소	소	
65	와촌	신한	313	-	1	51	51	경산시			
66	와촌	신한	119		3	15	15	김 * 북	경북 청도군 화양읍 오부실길		
67	와촌	신한	119		1	38	38	경산시			
68	와촌	신한	606		도	1,207	5 132	국(건설부)			
69	와촌	신한	118		2	289	289	경산시			
70	와촌	신한	375	-	4	644	644	경산시			
71	와촌	신한	375	-	5	301	301	경산시			
72	와촌	신한	375	-	6	102	102	나 * 인	대구시 서구 원대동		
73	와촌	신한	377	-	1	688	688	경산시			
74	와촌	신한	376	-	1	89	89	황 * 선	달성군 공산면 신무동		
75	와촌	신한	산35	-	2	514	514	경산시			
76	와촌	신한	산34	-	4	1,112	1,112	경산시			
77	와촌	신한	산34	-	5	3	3	박 * 호 외1명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33길		
78	와촌	대한	산1	-	2	386	386	경산시			
79	와촌	대한	53	-	1	255	255	경산시			
80	와촌	대한	54	-	1	121	121	경산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비고
	읍면	동 리	지번	지번				성 명	주 소	소	
81	와촌	대한	55	-	임	195	195	경산시			
82	와촌	대한	56	- 1	임	76	76	경산시			
83	와촌	대한	592	-	구	770	109	국(농림축산식품부)			
84	와촌	대한	593	-	도	3,613	149	국(건설부)			
85	와촌	대한	35	- 3	답	34	34	경산시			
86	와촌	대한	52	- 1	답	226	226	경산시			
87	와촌	대한	59	- 2	답	66	66	경산시			
88	와촌	대한	59	- 1	답	29	29	경산시			
89	와촌	대한	58	- 3	답	1,336	1,336	경산시			
90	와촌	대한	62	3	답	699	699	경산시			
91	와촌	대한	58	2	답	448	448	경산시			
92	와촌	대한	63	4	도	63	63	경산시			
93	와촌	대한	62	2	도	36	36	경산시			
94	와촌	신한	377	2	구	1,613	622	국(농림축산식품부)			
계					94 필지		17,294				

의성군 공고 제2025-878호

의성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산109-2번지 일원, 사곡면 양지리 산69-2번지 일원 가압장 설치
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열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후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2

의 성 군 수

1.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사유

○ 봉양면 분토리, 사곡면 양지2리 일원 미급수지역에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5	8	보조 간선 도로	6,091	사곡면 양지리 49	옥산면 실업리 567-9	일반 도로	-	의성군 고시 제2009-10호 (2009.03.16.)	
변경	소로	2	35	8	보조 간선 도로	6,091	사곡면 양지리 49	옥산면 실업리 567-9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35	소로 2-35	◦ 일부구간 선형변경 - B = 8m, L = 6,091m	◦ 기 개설된 도로현황을 반영하여 선형변경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봉양3	분토가압장	봉양면 분토리 산109-2번지 일원	-	증) 30	30	-	
신설	사곡1	양지2가압장	사곡면 양지리 산69-2번지 일원	-	증) 70	70	-	

■ 결정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봉양3	분토가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공급설비 신설 - A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양면 분토리 일원 미급수지역에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압장을 신설하고자 함
사곡1	양지2가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공급설비 신설 - A =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곡면 양지2리 일원 미급수지역에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압장을 신설하고자 함

3. 관련도면 : 게재생략

4. 열람기간 : 2025. 6. 2. ~ 2025. 6. 19 (14일 이상, 국·공휴일 제외)

5. 열람장소 : 의성군청 농촌활력과, 봉양면사무소, 사곡면사무소

6.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농촌활력과(☎054-830-6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시는 의성군청 농촌활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37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상주시장(관광진흥과)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771번지 외 8필지 일원 면적 : 68㎡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수상탐방로 ~ 낙강교 연결로 설치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 시설개요 : - 데크로드(W2.0×L115.8), A=265.1㎡ - 데크난간(W110×D110), 146경간 - 데크침터 1개소, A=66.1㎡
점 용 기 간	당초 : 2020년 06월 02일부터 2025년 06월 01일까지 변경 : 2025년 06월 02일부터 2030년 06월 01일까지